경제혁신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함께하는 FTA

July 2016 vol.50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상담 사례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 현장 방문 스토리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한중FTA 활용, 1380 차이나데스크에 다 있다!

'차이나데스크'는 한중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한중FTA 활용, 차이나데스크 상담은?

국번 없이 1380	http://fta1380.or.kr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한국무역협회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ssociation

글 김선녀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CSE 성시욱 부사장

품질로 경쟁하는 시장이라면 FTA와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소규모 펌프를 다루는 기업은 국내에서 저희가 유일합니다."

㈜CSE는 1988년 청석이라는 이름으로 보일러용 펌프 사업을 시작해 현재 펌프 및 모터, 그리고 종합유통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펌프 자체로만 놓고 보면 다소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펌프는 물과 공기를 다루는 모든 제품에 필요하다. 현재 정수기, 비데, 자판기, 각종 의료기구 등에 쓰이는 펌프를 비롯한 약 30종, 300여 모델의 펌프를 개발 제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정용 진공포장지, 의료보조기구 등 펌프 응용제품 제조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CSE의 수출 커리어 역시 베테랑급이다. 1994년부터 미국시장에 펌프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 월마트에 진공포장기 100만대를 OEM으로 납품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과 인도에 각각 합작회사와 법인을 설립했으며,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일본 등 수출이 활발해 현재 내수와 해외 수출 비율은 5:5 정도이다.

펌프 사업 역시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모터 쪽의 경우 중국 기업으로 인해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펌프 역시 소형 펌프 사업 쪽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간 상황이다.

"시장에서 가격 차이는 7~8% 차이에요.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기존 과세 대상이었던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 중국과의 경쟁에서 힘이 됩니다."

CSE는 펌프나 모터 사업 외에 유통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 활발한 수출자인 동시에 때론 수입자의 입장이기도 한 것이다.

"FTA는 직접적으로 수입자의 혜택이 커 보이지만 간접적으로 수출자가 더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고객사들이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고, 그만큼 더 많은 주문으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수출자와 수입자 양쪽의 입장에서 FTA를 경험하는 CSE는 해외와 비교해 국내의 인증 절차가 좀 더 까다롭다는 점, 또 협력업체에서 받는 원재료 관련 증빙서류를 수합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중국과 대기업 사이에서 중소기업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그 안에서도 자기만의 포지션을 확보하며 버텨내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CSE 성시욱 부사장은 결국은 품질이라고 말한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격만 낮추지는 않았어요. 품질은 유지하면서 지켜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이머징마켓 소비자의 품질 민감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흥국가들에게도 품질이 요구되는 시장이 곧 올 것입니다."

24

Contents

July 2016 vol.50

COVER STORY

FTA 활용률을 높이고, 기업들의 FTA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FTA활용지원센터와 기관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FTA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 지역에 있는 제주FTA활용센터와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한국산업단지 서울지역본부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6년 7월 1일(통권 50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People

01 ㈜CSE 성시욱 부사장

Issue Focus

04 르노삼성, 한·미 FTA 원산지검증 대응 간담회 개최
06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 개최 결과
08 Global FTA News

FTA Cartoon

10 새로운 글로벌 시장, 베트남의 문을 두드리다!
안종만

Cover Story

현장의 목소리

12 제주FTA활용센터 상담 사례
유종민 관세사(제주FTA활용지원센터)
14 기업 현장방문 스토리
민경원 관세사(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Special Report

16 TPP 추가 가입 희망 국가들의 현주소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18 한중일 FTA 현황과 비전
전재표(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 경제연구원)
20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 집중 조명

FTA & Company

24 2015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탐방:
㈜세종공업(최우수상)

FTA Study

26 WTO 무역 원활화 협정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28 실전 품목분류: ⑳CCTV와 블랙박스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30 한·중 FTA 비관세 장벽 이해 및 활용:
하반기 식품과 화장품 인허가 개정안 발표
김기현(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32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⑭중국 지식재산권 계약 – 영업비밀 및 경업금지 계약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34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콜롬비아 FTA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
유영진 관세사(세정관세법인)
36 FTA 사후검증팁:
효과적인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작성법⑥
유영웅 관세사(관세법인 네오)

Art & Culture

40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⑳물질문명과 자본주의

FTA News

42 한·콜롬비아 FTA 7월 15일 발효 예정 외

FTA Square

44 FTA 정보&독자의 소리

6

42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 발효 2년차에 접어든 지금 FTA 활용을 위한 인증수출자 신청 업체가 대폭 늘어났다. 사진은 지난 6월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중 FTA 활용 집중 실무교육.

①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및 원산지 전자 자료 교환 시스템 시행

한·중 FTA 수출이 빨라진다

한·중 FTA 발효 이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 수는 올해 5월 기준 1만 개를 넘어섰고, 올해 1~5월 중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규 지정 기업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4배 증가(408개 → 987개)했다. 이는 한·중 FTA 발효 2년차를 맞이하면서, FTA를 활용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신청 업체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간편해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수출자에게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것이다. 미인증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인증수출자는 증빙자료 제출 면제 및 2시간 이내 신속 발급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인증수출자 혜택은 한·중 FTA, 한·아세안 FTA 등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세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채택한 협정에 적용되며,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한국·유럽연합(EU) FTA의 경우,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이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한·EFTA의 경우는 수출자 서명 생략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신청은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FTA 활용 컨설팅·교육 등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인증수출자 인증 외에 FTA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소재지 :**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한·중 FTA 종이 없는 원산지 자료 교환 실시

서울세관에서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열린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논의되어 오던 원산지 전자 자료 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연내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이 시행되면,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되고 원산지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르노삼성, 한·미 FTA 원산지검증 대응 간담회 개최

한·미 FTA로 수출 차 한 대당 400달러 절감 효과

르노삼성자동차는 천홍욱 관세청장, 류원택 부산세관 통관국장 등 세관 고위관계자들과 르노삼성 협력업체 대표이사들이 함께 참석하는 '자동차산업 한·미 FTA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간담회'를 지난 6월 23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부터 국내 완성차의 대미 수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내년부터 예상되는 미국세관의 원산지 직접 검증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협력업체 수출 증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 진행

간담회는 르노삼성자동차 및 협력업체의원산지 검증 대응역량 강화 및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2014년부터 닛산 로그를 생산해 북미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 해 11만7천대 수출로 18억 달러 가까운 수출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까지 부과되던 2.5%의 관세가 사라지면, 대미 로그 수출은 1대당 약 400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관세 철폐 이후 미국 세관이 대미 수출 완성차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적용 예정인 부가가치기준의 순원가법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원산지관리 IT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는 민·관 합동 자동차산업 FTA 연구회를 발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특히 르노삼성자동차는 협력업체의 수출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오고 있다. 세관 당국과 함께 진행한 'YES FTA 아카데미'는 협력업체의 원산지 관리 등급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 또한 밀크런 방식을 통한협력업체의 수출 확대 지원도 함께 진행 중이다.

'밀크런(Milk Run)'은 정부가 도입한 한중일 글로벌 순회 집하 물류체계다. 한일 양국의 번호판이 부착된 트레일러로 양국 국도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조달 기간과 재고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밀크런 방식을 통해 협력회사가 강화된 원가 경쟁력으로 닛산큐슈공장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 34개 부품 협력업체의 밀크런 방식을 통한 수출실적은 2012년 390억원에서 2015년 1천822억원으로 증대되었다.

르노삼성, 관세청, 부산세관, 협력업체가 모두 참석한 '자동차산업 한·미 FTA 원산지검증대응전략 간담회'에서는 국내완성차 대미 수출 관세철폐 후 협력업체를 위한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관련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무역협회

지난 6월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가 개최되었다.
산업통상부 주형환 장관과 인도 상공부 시타라만 장관은 지난 2010년 발효한 한·인도 CEPA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 개최 결과

한국, 인도의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

지난 2010년 1월 발효한 한·인도 CEPA가 빠르게 개선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인도 뉴델리에서는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를 비롯해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 및 무역상담회가 열려 신재생, 부품소재, 소비재 협력 MOU 5건에 서명했고, 인도 진출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Korea Plus'가 인도 상공부 내에 설치되었다.

지난 6월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에서 특혜관세품목 확대, 원산지 기준 개선 등을 위해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로써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렸던 양국 정상회담에서 2016년 상반기 중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개시키로 한 정상 간 합의가 실현되었다. 그동안 양국은 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등 개선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금번 2차 CEPA 공동위에서는 협상개시에 합의했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시 선언

2010년 1월 발효한 한·인도 CEPA는 그간 한국의 대인도 수출과 양국 교역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해 왔으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하면 낮은 자유화율, 엄격한 원산지 기준 등으로 개선협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양국 장관은 향후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포괄적이고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 8월 중 제1차 협상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국 장관은 한·인도 간 교역규모가 양국 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고, 교역·투자 확대의 기반이 되는 CEPA 개선 협상을 가급적 오는 2017년 말까지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도는 13억 인구 중 35세 이하 인구가 9억을 차지할 정도로 노동력이 풍부

하고, 2014년 이후 7% 이상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구매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는 2015년 중국 성장률(6.9%)을 추월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 중이다. 특히,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Make in India'를 필두로 내수 위주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국가이므로, CEPA 개선협상 완료 시 핵심 교역파트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진출 지원하는 Korea Plus

6월 18일, CEPA 공동위에 앞서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Korea Plus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Korea Plus는 2015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설치키로 합의한 협력 사업으로, 한국 직원 2명, 인도 직원 3명이 인도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인도진출희망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지원 :** ①우리기업의 인도 진출 원활화를 위한 현안 파악 및 인도정부와 해소방안 협의, ②투자유망지역 및 산업 클러스터별 유망지도 작성, ③인도 정부, 현지 투자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기진출 한국기업 활동지원 및 애로해소 지원 :** ①교역원활화를 위한 애로현황 파악, 개선책 마련 및 인도정부에 전달, ②공단 방문 및 투자·애로해소 설명회(뉴델리, 뭄바이, 푸네, 첸나이 등) 개최

특히 Korea Plus는 인도 상공부 산하 투자청 내에 설치되어, 인도 진출 한국 기업들과 인도 정부를 직접 연결하는 창구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도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 및 투자를 완료한 기업의 애로 해소 등 대인도 투자 전 사이클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Korea Plus의 의의를 평가하고,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애로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Korea Plus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 개최

6월 17일에는 한국과 인도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인도 투자환경, 인도 투자 유망 분야 등 양국 기업들 간 협력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형환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2015년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개최된 CEO 포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인도 경제협력 방향 및 비전을 재확인하고 동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인도 정부가 산업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Make in India를 평가하고, 경공업, 중화학공업을 거쳐 IT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이 인도의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Natural Partner)국가임을 강조했다.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institutional foundation)인 CEPA 발효 이후 교역·투자 확대 등 성과를 평가하고, 원산지규정 개선을 통한 활용률 제고 등을 포함한 CEPA 개선협상을 조기에 타결하여 양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또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상호 투자 확대를 통해 상생발전할 것을 제안하고, 인도 자동차 수출 1위 업체인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며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가 인도의 경제성장 및 인도의 제3국 수출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역으로 인도 기업들도 한국 조선, 자동차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쌍용을 인수한 마힌드라사가 한국, 중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MOU 5건이 체결되어 에너지, 자동차부품, 유통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는 인도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중소기업 30개 사가 참여해 인도기업과 바이어 상담회를 개최하여 1,811만불 상담 성과를 창출했다. 주형환 장관은 하샤바르단 니오티아(Mr. Harshavardhan Neotia) 인도상공회의소(FICCI: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회장을 면담하여,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과 인도 현지 기업들 그리고 인도투자 기업과 한국 파트너 간 순조로운 매칭(match making)을 통해 양국 간 상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 상의와 KOTRA, 대한상의가 긴밀히 협조하고, 이번 CEPA 공동위 계기에 개최된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과 같은 양국 민간 차원의 협력채널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니오티아 회장은 인도 기업들이 방위산업, 자동차, 전자, 식품가공, 조선, 에너지, 인프라 산업 등에 관심이 크며 동 분야 한국 업체들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고 KOTRA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Mongolia-Japan]

몽골 최초 FTA 일본과 체결

몽·일 양국관계는 △1972년 외교관계 수립, △1997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 발전해 왔다. 2010년 11월 몽골 대통령 방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고를 위한 '경제 동반자 협정(EPA)' 체결에 합의했고, 2012년 양국 수교 40주년 기념, 몽골 총리 방일, 그리고 일본 총리 면담을 통해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했다. 약 3년간 양국 정부 부처 관계자 100여 명이 7단계의 협상 끝에 도쿄에서 2015년 2월 10일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2015년 2월 17일 '몽·일 EPA' 비준동의안이 몽골 국회를 통과해 공식 절차가 완료됐고, 같은 해 일본 측 국내 절차도 완료되었다. 결국 지난 2016년 5월 8일 양국 외교부 관계자가 울란바토르에서 '몽·일 EPA' 발효를 확정하는 공식서한을 교환하면서, 30일 이후인 6월 7일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헌재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

이 협정에 의하면 몽골 측에서 57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그 중 372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 197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소 4년에서 최대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반면 일본 측은 93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그 중 8004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129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 양국은 HS 코드 38가지 분류의 1355개 품목을 수출입했으며, 이 중 몽골 측은 24가지 분류의 129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96%까지, 일본 측은 14가지 분류의 6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0%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면세하기로 했다. 이 중 몽골 측은 825개(50%)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본 측은 60개(96%)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몽·일 EPA 체결에 따른 기대 효과

EPA 체결을 위한 몽골 측 사전 연구에 의하면 몽·일 EPA 발효 1년 후 양국 무역액은 약 50~60% 증가, 몽골의 국내총생산액은 연평균 약 0.33~0.34%, 전체 수출은 약 0.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몽골이 일본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세입액은 연평균 약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몽골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역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한다. EPA는 몽골의 첫 FTA와 동격인 경제협정으로 국내 산업 육성 및 부가가치 창출로 외화 수익 증대, 대몽골 FDI 유입으로 인한 선순환 및 대외 수출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EPA 체결은 중·러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약소국 몽골의 대외교류 균형화 및 중·러의 영향력 제한을 위한 '제3이웃 정책'의 결실로, 몽골이 지역 또는 세계적 공동체에 동참해 경제 불황을 탈피하고 높은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Mercado Common Sour]

EU와 남미공동시장의 FTA 논의 본격화

1999년부터 양측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다 메르코수르[1] 측의 반발로 2004년 논의가 한 차례 중단된 바 있으며, 2010년부터 다시 이 문제에 접근해 논의를 이어오다 2015년 EU는 새로운 무역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제3세계를 아우르는 EU의 포괄적인 경제협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았다. 또한 EU 무역 커미셔너인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om)과 우루과이 외무장관 로돌포 닌 노보아(Rodolfo Nin Novoa)는 2016년 4월 초에 회동을 갖고 EU-메르코수르 간 FTA 논의를 지속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작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EU 농민들은 육류, 유가공품 등 식품류 관세 철폐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가장 큰 농업 생산국인 프랑스가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EU에 대한 메르코수르의 최대 수출품은 농산품(43%), 원자재(28%) 등으로, 자유무역이 실현될 경우 유럽 농업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코수르도 자동차 관련 산업과 정부조달 시장의 대EU 개방은 부담으로 작용하며, 전통적으로 개혁·개방보다는 보호주의를 선택해온 남미 국가들의 경로 의존성도 간과할 수 없다.

1 **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주요 5개국이 회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관세동맹 블록으로, 1991년 출범 이래로 회원국 간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대외무역 시 동일한 관세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EU-메르코수르 FTA 발효 시 영향

이번 FTA가 성사될 경우, EU와 메르코수르 블록 사이에는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장벽 등 다방면에 걸친 개방과 통합이 실현된다. EU의 대메르코수르 수출은 농업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다. 메르코수르에서 EU로의 농업 생산품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나, EU의 제조업, 서비스업의 메르코수르 진출이 증가해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한다. 기존 중남미시장에 대한 국내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전력·발전기기, 전자제품, 제약제품, 기타 자재품 등은 EU-메르코수르 FTA로 인한 EU의 수출상승 효과가 가장 큰 품목들이다. 한국과 FTA가 체결된 남미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에는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남미 중산층 증가와 인프라 확장 추세는 '양보다는 질'에 초점 맞춘 소비행태를 불러오고 있으며, 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EU 제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이다.

카툰 안종만

새로운 글로벌 시장, 베트남의 문을 두드리다!

FTA 현장의 목소리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상담 사례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 현장 방문 스토리

글 유종민 관세사(제주FTA활용지원센터)

제주 FTA활용지원센터 상담 사례

제주산 용암해수로 만든 생수의 원산지판정 절차는?

제주도의 특성상 지역산 원료를 이용해 만든 가공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때 가공 절차와 방식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제주FTA활용지원센터는 FTA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주 소재 업체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FTA 활용 관련 다양한 컨설팅과 상담, 각종 교육 및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FTA활용지원세터의 유종민 관세사가 최근 중국으로 제주산 생수를 수출하는 제주도의 한 기업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소개한다. 이번 사례는 원산지판정이 단순히 완전생산기준이 아닌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에서 채취했는데 왜?

업체를 방문한 두 컨설턴트는 사전에 작성을 요청하였던 생수의 BOM을 수취하여 바로 원산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업체를 방문하기 전 담당자와 유선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컨설팅 방향을 잡는데, 막상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해보면 당초 유선상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원산지판정 자체의 오류가 생기거나 충족을 위한 전략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 업체도 바로 그러한 사례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제주산 용암해수의 기본 원료인 용암해수를 업체에서 직접 채취하여 생산한 본 제품의 BOM을 건네받고 방문하였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직접 용암해수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용암해수를 분리하여 얻은 탈염수와 미네랄수, 그리고 물에 섞는 소량의 수산화칼슘을 혼합한 물을 주변에 있는 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해 용기에 담아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BOM에는 용암해수와 수산화칼슘 2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매'하고 있는 탈염수, 미네랄수, 수산화칼슘까지 총 세 가지를 적어야 함을 설명했다. 그후 원산지기준 역시 한·중 FTA 협정에서 생수(2201.10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CC(2단위 세번변경기준)로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더니 담당자로부터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다.

"탈염수와 미네랄수는 구매하고 있지만 어차피 그 원천은 제주라는 지역에서 채취한 제주용암해수로부터 분리해낸 물인데 왜 완전생산기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많은 업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한국에서 생산되었는데 왜 한국산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어려운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판정절차를 거쳐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여러 수입자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기계를 생산하는 공산품 제작업체보다는 한국에서 채취하거나 수확한 1차 산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하는 업체에서 더 자주 나오는 편이다.

"물론 귀사가 생산하는 생수는 분명히 제주산 용암해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초 원료가 되는 용암해수를 귀사에서 직접 채취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공급업체가 채취 후 그로부터 분리해낸 두 종류의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귀사가 완전히 생산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추가로 투입되는 수산화칼슘 또한 귀사가 직접 생산하고 있지 않은 만큼 품목별 원산지기준인 CC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FTA에서는 서류로써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본 업체의 경우 완제품인 생수와 동일한 HS코드를 가진 탈염수와 미네랄수를 제주소재업체로부터 꾸준히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업체로부터 반드시 '역내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만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제주도 지역 FTA 활용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유종민 관세사와 최준 원산지관리사

완벽한 발급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사업'

두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은 업체 담당자는 즉시 용암해수를 채취하는 원료 공급업체에 원산지확인서를 역내로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익숙치 않은 제주업체의 특성상 작성하는 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독점 공급을 맺고 있어 적극적인 협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원료 공급업체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용암해수 채취허가증을 가지고 있었기에 원산지 판정에는 그리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으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은 처음 FTA를 접하는 업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시간은 부족했고 수출신고는 이미 수리되어 선적을 앞두고 있는 본 업체는 중국 수입자에게 최대한 빨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득, 최준 원산지관리사의 머릿속에 해결방안이 떠올랐다.

"지금 저희는 귀사의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FTA활용지원센터는 저희가 진행하는 방문컨설팅과는 별도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공급업체를 별도의 용역 관세사가 방문하여 서류 취합 및 원산지확인서 작성을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완전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할 듯 합니다."

최준 원산지관리사의 빠른 판단력으로 원산지 사전확인 담당 관세사를 공급업체에 방문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역내 원산지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완제품인 생수와 HS코드가 상이한 수산화칼슘(2825.90호)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에 지장이 없어 별도의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지는 않았다.

구매입증자료 파악 및 선택 중요해

생수의 BOM에 기재된 원재료는 총 3개로서 탈염수, 미네랄수, 수산화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다. BOM상 각 원재료는 실제로 구매하였다는 입증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만큼 담당자와 상의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과 같은 구매입증자료를 찾아서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로 준비하고자 했다. 본 업체의 경우에는 납부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어 해당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많은 업체들은 원재료들이 연속성을 가진 채로 꾸준히 구매되고 있어 구매입증자료를 준비할 때 가장 최근 일자의 구매입증 자료를 취합하는 경우가 있으나 완제품 생산 공정의 흐름(원재료 투입 → 완제품 생산)을 감안하여 제품의 출하일보다 이전 일자의 원재료 구매입증자료로 준비하여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입통관 시점에는 반드시 원본 제출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신청하여 발급받는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제주FTA활용지원센터가 속해 있는 제주상공회의소에 온라인을 통해 발급되어야한다. 따라서 무역인증서비스센터의 공인인증서 유효성확인, 서명등록, 웹인증 사용자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각 기재항목별 작성요령을 지원하여 문제없는 한·중 FTA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였다. 긴박했던 컨설팅 끝에 한·중 FTA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식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인장 및 서명이 새겨진 원본을 들고 있는 업체담당자를 본 후에야 두 컨설턴트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이에 끝나지 않고 두 컨설턴트는 마지막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중 FTA에서 중국은 한국과 달리 수입통관 시점에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만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특송 업체를 이용하여 서둘러서 중국수입자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단순히 완전생산기준으로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본 사례는 두 컨설턴트에게도 원산지 판정이 업체별 거래유형, 생산방식, 품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제주FTA활용지원센터는 오늘도 유종민 관세사와 최준 원산지관리사, 두 컨설턴트를 위하여 뒤에서 말없이 조력해주는 박형호 주임의 멋진 팀워크로 제주업체의 FTA활용 및 제주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 민경원 관세사(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사진 한국경제신문

기업 현장방문 스토리

인증수출자 발급으로 원산지 관리 업무 시간과 비용 줄여

여성 위생용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웰크론헬스케어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현장 방문 컨설팅을 통해 중국과의 FTA 발효 후 원산지관리에 대한 세관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서류를 매번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업무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웰크론헬스케어의 상담 사례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 시 꼭 필요한 세관 인증에 대해 알아보자.

여성의 건강을 생각한 한방생리대

서울 구로구 ㈜웰크론 사옥에 위치한 ㈜웰크론헬스케어는 2002년 일반제품과 차별화해서 국내 최초로 한방생리대를 개발하고 '예지미인'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하였다. 인천공장(본사)에서는 이 품목을 포함해서 여성용 제품(한방 및 일반 생리대, 라이너, 오버나이트), 유아용 제품(기저귀, 물티슈), 기타 품목(미용티슈, 청결제 등)을 제조하고 있다.

한방생리대란 동의보감에 근거해서 여성의 냉증, 생리불순 등 여성 질환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강화사자발쑥, 익모초 등 5가지 국산 한약재 분말을 패드에 도포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약쑥의 효능이 여성의 몸에 이롭게 작용될 수 있고, 한방 원료의 고유 향을 살려 여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 및 해외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에 입점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소비재라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다. 해외로는 중국,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20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2015년부터 월마트, 까르푸, 테스코 등을 비롯한 대형마트 전국 주요 매장에 입점하고 있고, 백화점과 슈퍼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웰크론헬스케어의 2013년 해외 수출(전체 매출액) 금액은 15억(210억), 2014년에는 22억(190억), 2015년 32억(184억)을 기록하였으며,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수출 예상금액은 35억으로 예상된다.

㈜웰크론헬스케어 해외사업팀 황재원 팀장은 "한·아세안 및 한·EU FTA에 이어 중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여성용 위생용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2%의 관세가 인하(HS 9619.00, 2016년 기준 MFN관세율 10% → FTA관세율 8%)됨으로써 중국 대형마트에선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중국 수출 및 현지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웰크론헬스케어 연도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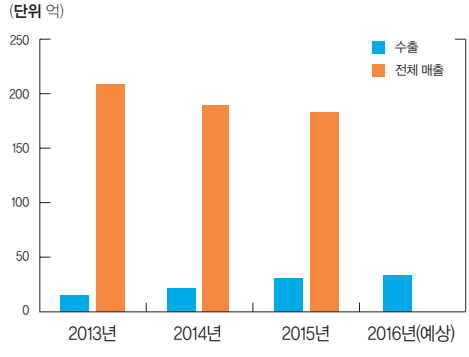

한·중 FTA를 위한 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고 베트남 거래처에서는 계약체결 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지 않고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도 수입통관 시 필수적으로 C/O를 요청하였다. ㈜웰

크론헬스케어도 수입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4년에 'SANITARY PAD(생리대, HS 4814.40)' 품목에 대한 품목별 인증수출자(한·아세안, 한·EU FTA)를 취득하여 원산지관리업무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뒤이어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자 ㈜웰크론헬스케어는 한·중 FTA를 대상으로 추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 지사)에 현장방문 컨설팅을 요청하게 되었다. 수출제품은 여성용 위생용품으로 중국에서 2%의 관세가 절감되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만 했는데,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으면 C/O를 신청할 때마다 매번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 및 제품 정보, 거래관계, 원산지관리 현황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였다. 품목분류 정합성을 검토한 결과, 현재 기존 인증을 받은 품목의 세번(HS)이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였다. 예전에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이 재질에 따라 제4818호에 분류되었는데 세계관세기구(WCO) 제5차 HS 개정으로 동 물품이 분류될 수 있는 새로운 '호(HS 4단위)'가 신설되었고, 신설된 세번에 해당 제품을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 품목분류표 개정고시(제2011-17호)를 근거자료로 하여 수출제품은 제9619.00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담당자에게 설명하였다.

완제품의 품목분류 정합성을 검토하고, 완제품 세번(HS 9619)과 원재료 세번을 비교하여 4단위 세번이 모두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수출제품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으로서 아세안, EU 및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하여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변경된 세번 제9619.00호를 기준으로 원산지소명서, BOM 등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요령을 설명하여 담당자가 해당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아세안 및 한·EU FTA에 대해서도 변경된 세번을 적용하여 신규 인증수출자를 관할 세관에 신청하였다. 신청서류 심사과정에서는 수출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이므로 원재료와 완제품의 품목분류 근거에 대해 소명하게 되었는데, 이는 서류에 기재된 완제품 또는 원재료의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CTH)을 불충족하게 되어 원산지가 불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제품의 세번은 기획재정부 개정고시를 근거로 하여 다툴 여지가 없었으나, 원재료 중 일부(셀룰로오스섬유로 구성되어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 세번에 관련된 세관 질의에 대해서는 원재료의 재질, 규격(폭), 구성요소, 부착위치 등을 설명함으로써 기재된 세번이 정확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다. 세관 질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비교적 빠르게 신청일로부터 약 2주 후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서(Certificate)가 발급되었다. ㈜웰크론헬스케어는 원산지관리에 대한 세관 공식 인증을 받음으로써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서류를 매번 제출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으니 업무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출 대상국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기존 수입자와 신규 바이어의 인식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머지않아 중국시장에서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해본다.

생리대 등 위생용품의 HS 개정 내용

기준년도	H S	품 명
2012	4818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 **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의류 및 의류부속품
2016	9619 (신설)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글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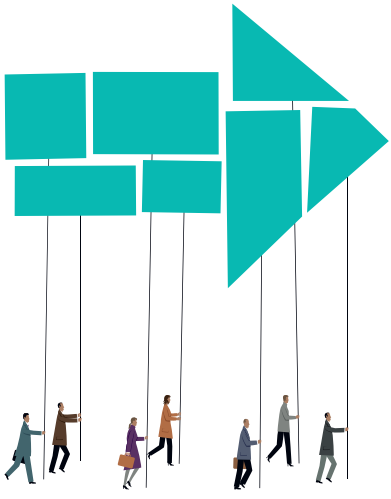

TPP 추가 가입 희망 국가들의 현주소

TPP로 가는 길

TPP는 정식 서명에 이른 최초의 메가 FTA로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에 최종 발효도 되지 않았지만 기존 참여국 외에 추가로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민첩하다. 물론 기존 참여국의 국내 비준 절차도 험로(險路)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종 발효 전에는 추가 가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어떤 국가들이 어느 위치에서 추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전략을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TPP가 서명된 지 어느덧 5개월여가 지나고 있지만 이후의 진전에 대해선 비교적 조용한 상황이다. 이는 영국의 EU 이탈, 브렉시트(Brexit)로 세계의 이목이 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으며, 정식 서명에도 불구 12개 각 국의 비준절차가 저마다의 입장 차이와 이해관계에 대한 복잡한 셈법으로 지지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TPP 추가 가입에 대하여 공식 혹은 비공식적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만 : 정치-경제, 중국-미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외교적으로 중국과의 양안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수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마잉주(馬英九) 총통 시절부터 거대 FTA 참가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아직 현실화된 것은 없지만 TPP와 RCEP 참가는 대만의 지상 목표였으며, 미국 역시 대만의 TPP 가입에 대해선 결코 부정적이지 않았다. 우선 대만의 입장에선 지난 2012년 한중일 3국이 FTA협상을 개시하자 경제적 고립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에 TPP 및 RCEP 참여는 국제통상체제에서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제 대만과 TPP 참여국과의 교역 규모는 전체 무역액의 34.4%, RCEP 참여국과는 57%를 차지한다. TPP 신규 가입에 대한 실질적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의 가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RCEP의 경우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주창하는 중국이 참여하고 있어 대만의 합류가능여부가 불투명하다. 그 때문에 대만은 지난 2002년 1월 WTO 단독 가입 이후 또 하나의 독립적 행보로써 TPP 가입에 큰 기대를 걸고 이를 경제 침체를 타개하고 세계 및 지역 간 네트워크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작전'에 비유, 지난 제14대 총통선거 당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를 제1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억이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그러하지만 특히 대만에서 여야의 1순위 공약이 일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였는데, 결국 300만 표가 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8년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대만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은 아시아에서 FTA 추진이 가장 부진한 국가 중 하나인 대만의 '통상적 환골탈태'를 지향, TPP 가입에 속도를 더하려 한다.

대만의 기업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수혜를 예상하고, 침체에 빠진 수출 및 투자의 회복,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 등을 탈피하고자 TPP가입을 대체로 지지하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과 농수산물 안전 규범 등을 이유로 민간에서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도 불사해가며 TPP 가입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반발, 그리고 지난 5월초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되며 붉어진 환율조작 의혹 등은 대만이 TPP 가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태국: TPP 최종 불참 시 여파 가장 클 것

태국은 오랜 기간 일본산 자동차 생산기지로써 TPP에서 도입되는 누적원산지제도(2015년 11월호 참고)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평가되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TPP에 불참했다. 우선 TPP 협정이 다루는 높은 수준의 내용들이 부담이었으며, 가입 시 산업별 유불리에 관한 분석이 엇갈려 국내 산업계의 찬반 논란이 뜨거웠고 이에 더하여 2014년에는 쿠데타를 통한 군부정권의 집권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은행 분석에 따르면, TPP 비회원국으로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나라 중 하나로 태국이 꼽혔고 – 이는 혼다, 닛산, 소니 등 일본 기업들이 TPP 발효와 함께 비참여국인 태국보다는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과 같은 참여국으로의 투자를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 – 반대로 태국개발연구원(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은 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은 물론 그 외 의류와 섬유, 농산품 및 서비스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으며,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와 동서문화교류센터(East West Center)는 태국의 TPP가입으로 GDP가 최대 7.6% 성장할 것이며,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對)태국 최대 투자국인 일본은 태국의 TPP 가입을 지원, 지지한다는 입장이나 우선 태국은 현재 서명된 TPP의 내용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약 분야 특허권과 관련한 내용이나 생물 다양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와 양보가 절필하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불예측성이 여전하여 신흥국 태국 역시 금융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외환보유고가 건실하고,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나 실업률은 낮아 경제 기초와 성장 잠재력이 탄탄한 태국의 입장에선 TPP에 가입 성공할 시 누릴 수 있는 경제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비(非) APEC 국가임에도 TPP 가입 적극 추진

한국과 7월 15일 FTA 최종 발효 예정인 콜롬비아도 TPP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TPP 참여국들이 협정 가입의 대상을 고려할 때에(절대적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APEC 회원국들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2016년 2월호 참고). 기존 12개국 외에 새로운 국가가 TPP에 공식 참여하기 위해서는 12개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마치고,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콜롬비아로서는 TPP와 동시에 APEC 가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지리적으로 태평양에 위치, 그리고 기존 12개 참여국들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멕시코, 페루, 칠레와 함께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의 당사국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TPP 참여의 정당성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TPP 협상 초기 당시 참여를 망설이게 했던 국내 농업분야(특히 뉴질랜드와의 우유 산업 경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TPP 가입으로 인한 시장개방 시의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가차원의개선 및 개혁 노력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만은 2015년 미국의 교역 상대국 9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일본에 앞서 대만의 제2대 무역 상대국으로 자리했다. TPP에는 미국 외에도 중국을 견제하는 호주와 일본이 참여 중이어서 이들의 입장도 대만에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TPP 최종 불참이 결정될 경우 태국은 0.9%, 한국은 0.34%의 GDP 하락을 경험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남미 국가들 중에 APEC에 가입한 국가는 멕시코, 칠레, 페루 3국으로 콜롬비아는 지난 1995년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을 마쳤으나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전재표 경제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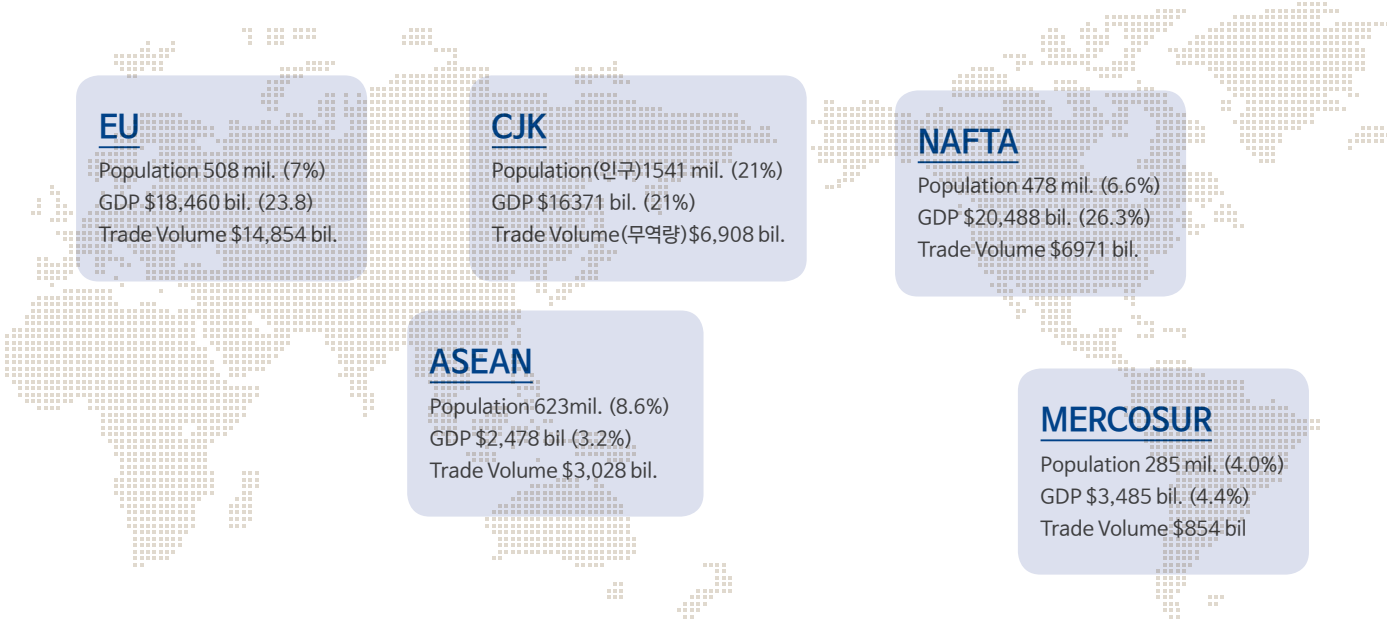

한중일 FTA 현황과 비전

한중일 3국 간 역내무역 타 경제권보다 낮지만 성장 잠재력 높아

한중일 3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3국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를 진행해 오다가, 2010년부터 2011년 까지 한중일 FTA 산학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3국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시켰다. 3국은 지속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2012년 11월에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여 2013년 제1차 한중일 FTA 협상을 시작해 현재 2016년까지 제10차 한중일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3국의 노력은 단순 경제통합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다. 통계적으로 한중일은 GDP 측면에서도 세계 경제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규모 면에서 또한 세계 인구의 21%에 달한다. 3국의 교역량은 세계 교역량의 18%를 차지한다.

한중일 무역 현황

한중일 3국간 역내무역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3국의 무역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경제의 대외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GDP대비 수출 거래비중이 51%, GDP 대비 수입 거래비중이 45%로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출입물가가 떨어지면서 더 현저히 나타났다. 중국 또한 수출 및 수입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23%와 19%로 떨어졌다. 일본은 2009년도에 GDP대비 수출비중 13%와 수입비중 12%에 머물다가 2014년에는 18%와 21%로 점차 증가하였다. 한국 및 중국의 수출입 비중의 감소세를 감안하더라도 3국의 대외 수출입은 한중일의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GDP대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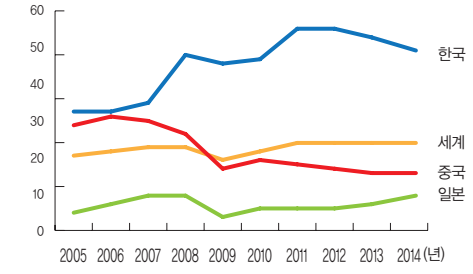

GDP대비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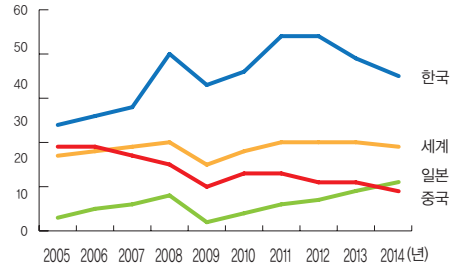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한중일 주요 무역 상대국 (2014)

순위	중국		일본		한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	United States	**한국(9.7%)**	United States	**중국(22.3%)**	**중국(25.4%)**	**중국(17.1%)**
2	Hong Kong	**일본(8.3%)**	**중국(18.3%)**	United States	United States	**일본(10.2%)**
3	**일본(6.4%)**	United States	**ROK(7.5%)**	Australia	**일본(5.6%)**	United States
4	**한국(4.3%)**	Taiwan	Taiwan	Saudi Arabia	Hong Kong	Saudi Arabia
7	Vietnam	Malaysia	Singapore	**한국(4.1%)**	Singapore	Qatar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한중일 역내 무역 그리고 타경제권과 비교

대외거래 의존도가 높은 3국은,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무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간 역내무역량의 비율은 1990년 20%에서 2004년까지 24%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19%까지 떨어졌다. EU (65%), NAFTA (42%), ASEAN (24%)과 같은 타 경제권과 비교했을 때도 한중일 3국의 역내무역비율은 아직까지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한중일의 역내 무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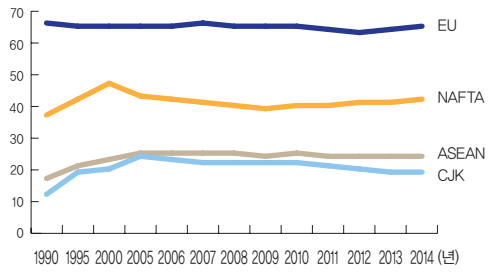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한중일 역내 무역의 잠재성

역내무역비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그만큼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높다. 우선 한중일은 상호 간 상위 무역 상대국이다. 전반적으로 3국은 수출입 상위 3위 상대국에 서로 포함되어 있을 만큼 상호간 무역 의존도가 높다.

또한, 한중일 3국의 수출 품목(2014년 기준)을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중일의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서 3국은 전기기기, 기계류, 의류, 금속, 화학품 등 무려 8개 품목에서 동일하다. 상위 10대 수입 품목(2014년 기준)에서도 3국은 7개의 품목에서 동일하며, 상위 3위 품목(광물, 전기기기, 기계류)은 순서 또한 동일하다.

한중일의 상호보완 관계

한중일 3국은 산업의 중복성이 강하고 상호보완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국가들이다. 3국은 수준 높고 상호보완적인 한중일 FTA를 통해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RCEP 및 TPP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무역 활성화와 경제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 집중 조명

자국 내 구매력 확대,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올라

최근 베트남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TPP 체결 이후 역내국 사이에서 중국을 누르고 새로운 아시아의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도 규제완화 등 교역을 위한 문을 열고 있다. 우리와 FTA를 맺은 베트남은 최근 활용 촉진 업무 협약을 맺으며, 보다 활발한 FTA 활용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떠오르는 신흥 무역국, 베트남의 최근 이슈들을 살펴보고, 향후 수출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아시아의 신흥 무역국으로 손꼽히는 베트남은 현재 TPP, 아세안경제공동체 등 글로벌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며 적극적인 교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❶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신흥 국가

베트남은 남한의 3.3배(33만1,210km2)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9,4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해 '포스트 차이나'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가 70%를 차지해 노동력이 풍부하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 AEC(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등으로 생산거점으로서의 이점이 부각되고 있다. 2013년 이래 베트남에는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2015년 누적 기준 총 1,417억 달러에 달한다. 올해 4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89.9% 증가한 50.8억 달러 규모, 697개의 새로운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허가되었다. 활발한 외국인 투자에 기반해 2016년 베트남 경제는 6.7~6.8%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 따라 베트남 사람들의 소득, 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베트남 최저임금은 2014년 이후 매년 10~14% 증가해 2016년 월 350만동(1지역 기준, USD159)에 달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베트남 가구당 지출 규모는 2015년 3,750달러에서 2020년 5,141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호치민, 하노이 같은 대도시는 이미 1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 여자를 보면 시장이 보인다

지난 6월 발표된 현지 리포트에서 한국무역협회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베트남 사회에서 여자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해 베트남 시장을 해석했다.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모계중심사회로 불린다. 결혼을 하면 대개 여성이 경제주도권을 갖고 남자는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매 결정에서도 아내가 주도한다. 가정에서 뿐 아니라 베트남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활발하다. 최근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국회 주석과 정치부 의원 3명의 자리에 여성의원이 당선되었으며 베트남 중앙 기관 및 지방 기관 중 여성이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기관이 50% 이상이다. '2016년 마스터카드 여성 사회 진출 지수' 순위에서 베트남은 총점 64.2점으로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중국에 이어 6위에 올랐다. 반면 한국은 52점으로 13위에 그쳤다.

베트남 유통 관련 전문가에게 "명절 이외에 판매 이벤트를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물으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0월 20일 베트남 여성의 날"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역사적으로 오랜 전쟁을 치러온 베트남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가정, 전쟁에 필요한 무기 생산, 식량 생산의 의무까지 도맡아왔다. 여성의 날은 나라를 지켜온 여성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의미를 국가적으로 기리는 것이다. 여성의 날이 되면 남성이 부인이나 연인, 어머니, 누이 등 주변 여성들에게 꽃과 더불어 향수나 화장품, 핸드백 등을 선물하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한다. 베트남에서 손꼽히는 위인 중에는 서기 40년 중국에 대항해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싸운 '베트남의 잔다르크' 쯩(Trưng)자매가 있고 이들을 기념하는 하이바쯩(Hai Bà Trưng) 거리가 있을 정도로 베트남의 여성에 대한 인식, 사회 활동 참여도가 남다르다. 현대 사회로 넘어와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베트남 시장의 소비 트렌드도 여성의 취향, 관심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베트남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3대 소비키워드는 '아름다움', '안전', '자녀'로 압축되며 향후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진출 분야를 조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 아름다워지고 싶다. 더 하얗게, 밝게

베트남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Intage에 따르면 베트남 20~40대 여성들의 지난 6개월간 사용한 화장품 종류가 전년 동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아졌다. 특히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 색조 화장품 사용이 크게 늘었고 이에 비례해 메이크업 리무버 제품의 사용도 증가했다. 베트남 여성들은 과거에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최근 사회 진출 확대와 자신만의 미를 분출하려는 욕구가 결합해 색조 화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색조 중에서는 가격 대비 화장의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립스틱 제품의 구매가 가장 활발하다.

베트남 여성들이 으뜸으로 치는 미(美)의 요건은 하얀 피부다. 기초 화장품을 살 때 화이트닝 기능이 들어간 것을 선호하고 파운데이션을 살 때도 하얀 피부를 표현하고 싶어

한국 여성이 사용하는 21호, 23호의 자연스러운 베이지 색상보다 한층 밝은 13호를 선호한다.

호치민의 6월 평균 체감온도는 37도, 습도는 70% 이상으로 한국의 찜질방을 연상케 한다. 이런 날씨에 얼굴과 다리, 손 모두 옷가지로 감싸고, 가장 보편적인 운송수단인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여성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매연 때문에 가린 것이냐는 질문에 "타지 않기 위해서"라는 답이 돌아온다.

안전에 대한 욕구 강화

지난 4월 초 베트남 중북부 하띤(Hà Tĩnh)성 해변에서 약 10~15톤 규모의 물고기 떼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어 꽝빈(Quang BInh), 꽝찌(Quang Tri), 트어티엔-후에(Thừa Thiên-Huế) 등 3개 지방성 해변에서도 물고기 사체가 떠올라 베트남 사람들의 원인 규명과 정부 대책 요구에 대한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외식 문화가 발달한 베트남에서 집에서 직접 요리하려는 사람이 늘고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아용 바디케어제품 브랜드는 존슨앤존슨으로 최근 이 회사가 베이비 파우더 제품의 암 유발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7,200만 달러(87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는 소식에 베트남 엄마들의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비싸더라도 외국계 대기업 제품보다 한국의 친환경 유아용 제품을 쓰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시장조사기관 닐슨의 조사에서 2015년 베트남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경제, 세 번째가 고용 안정성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안전에 대한 베트남 여성들의 요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❷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른 베트남

TPP 타결, AEC(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등 최근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세계 주요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5월 KOTRA에서 발표한 '국제통상 환경변화와 글로벌 생산기지변화 동향' 보고서는 삼성전자, 도요타 등 27개 기업이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 6개국(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에 최근 2년 동안 진출했거나, 향후 2년 내 진출을 추진 중인 31개 이전 사례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	유출기업 수	유입기업 수	순유입기업 수
베트남	1	15	14
멕시코	0	3	3
동남아시아국가	2	3	1
인도네이사	2	2	0
말레이시아	2	2	0
태국	3	1	-2
기타국가	6	2	-4
중국	11	3	-8
계	27	31	

보고서 조사 결과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개 사례 중 절반에 가까운 15개가 베트남을 진출 희망지로 선택했고, 베트남을 떠나려는 기업은 1개에 불과해 순유입기업 수는 14개를 기록했다. 순유입기업 수 2위인 멕시코의 3개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의 순유입기업 수 -8과도 크게 대비된다.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3개인데 반해, 중국을 떠나려는 기업은 11개로 나타나 중국에서의 기업 이탈현상이 뚜렷하다. 이전 사유 총 45건 중 무역협정 활용을 위해 이전하는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TPP 활용이 14건으로 가장 많아,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은진 오사카 무역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역시 베트남이 유망 투자지로 떠오르고 있다. 미즈호 은행이 지난 2월 자본금 1,000만엔 이상 제조기업 44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베트남에 대한 일본 기업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향후 투자 예정 지역으로 아세안을 선택한 비율이 43.8%로 1위를 차지했는데, 아세안 국가 중에는 베트남을 선택한 기업 비중이 2014년 48.6%에서 2015년 53.5%로 급증했다.

베트남이 유망 투자지로 떠오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TPP 가입국이라는 점으로 TPP 역내국을 위한 생산기지

및 수출거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TPP 발효 시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조달 및 소매시장 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경기둔화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에 더해, 중일 관계 악화에 따라 중국의 메리트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베트남이 유망 투자지로 떠오르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③ 한·베트남 FTA 활용촉진 업무 협약 체결

지난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 부국장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간 FTA 활용촉진을 위한 '한·베트남 FTA 활용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핵심개혁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이 FTA 활용점검차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부휘 손 무역진흥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FTA 활용촉진을 위한 협의체 정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의 체결을 제안한 것에 따른 것이다. FTA 관련 협상도 중요하지만 발효 후 기업의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의 제안 취지에 베트남 측이 동의하여 양국 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서명했다.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 해소 위한 협력 강화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한·베트남 FTA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측 경제의 우호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국내대책관과 무역진흥청장은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한·베트남 FTA 활용촉진을 위한 현안 발굴, 상황 점검을 추진하며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기업의 FTA 활용 기회의 발굴과 비관세장벽 등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박람회, 컨퍼런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FTA 활용을 위한 조사, 교육, 홍보 등 한국의 우수한 FTA 활용 지원 기반을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협약은 한·베트남 FTA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로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서 비관세장벽 등 활용상 애로를 겪을 경우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국장급 회의체의 정례화를 통해 매년 양국의 FTA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적극적 도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지 기업인들의 한·베트남 FTA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해 우리 정부의 FTA 활용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회의체를 신설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MOU 내용 현실화를 위한 합동계획 수립할 예정으로 올해 말 우리나라에서 제1회 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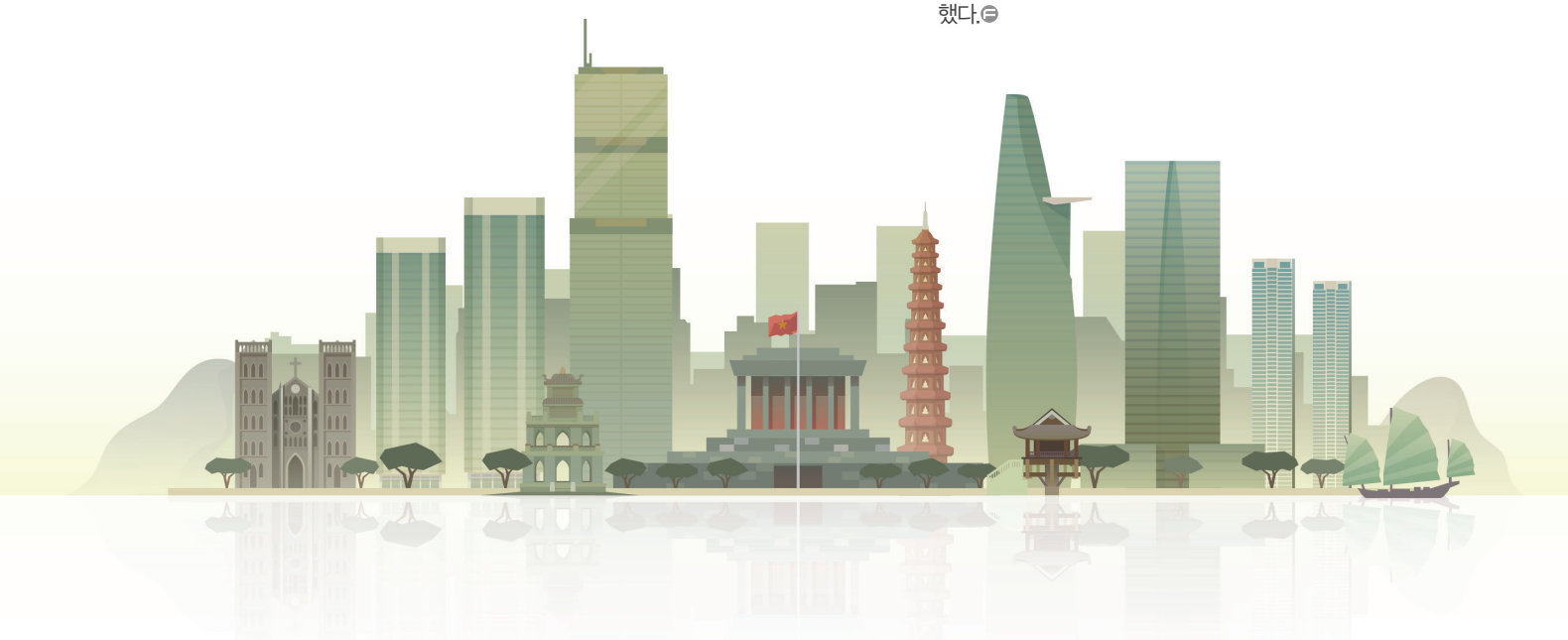

글 김선녀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세종공업 사옥 본관에 있는 전시실에서 구매팀 사우들이 함께했다. 까다로운 인증절차 및 관세 관련 업무를 베테랑처럼 해내는 FTA 활용의 주역들이다.

2015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탐방: ㈜세종공업(최우수상)

새로운 기술개발과 저력으로 FTA 소음까지 우리가 잡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관세 혜택을 받는다?!' 울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 ㈜세종공업은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과 함께 FTA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남들보다 적극적으로 시작한 FTA로 다양한 실패와 대응 사례를 경험하며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의 배기시스템은 물론 FTA 활용의 베테랑이 되었다.

최근 배기가스 조작 등의 문제로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 북구에 자리하고 있는 ㈜세종공업은 1976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배기시스템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을 지켜나가며 승용차는 물론 상용차를 위한 배기시스템을 개발, 양산하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상용화를 대비해 관련 운전장치 핵심부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사업의 또 다른 역사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세종공업은 낮은 언덕 위에 지어진 반듯한 공장건물들이 효문공업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본관과 천장이 높은 제1, 2, 3 공장은 겉에서 보면 무척 고요하지만 그 안을 들어가면 산업로봇들이 한시도 쉬지 않고, 배기시스템 부품들을 만들고, 아반테md, 산타페 등 현대기아자동차의 낯익은 차

이름들이 생산라인마다 붙어있다.

㈜세종공업은 1976년 창립해 대한민국의 자동차 배기시스템 산업의 역사와 그 맥을 함께 해오고 있다. 세종공업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용 소음기와 컨버터 등의 배기 시스템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가 선정한 '그랜드 품질 5스타 1호 업체'에 등재될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자랑한다.

"흔히 머플러라고 불리는 부품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 앞부분에 해당하는 '배기 매니폴드(Exhaust Manifold)', 중앙 부분의 촉매정화장치(Catalytic Converter), 그리고 소음기(Muffler)입니다. 배기시스템의 역할은 소음을 감쇠시키고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를 냉각, 팽창하여 저온 저압의 상태로 변환해 배기가스의 흐름을 유도하고 정화시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관련 법규 역시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세종공업은 국제적으로 엄격해진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하고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배기가스 및 소음저감기술, 배기열 회수 기술과 부품 경량화 기술 개발에도 연구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배기가스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솔린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의 GDI 엔진이 배출하는 입자상 물질을 저감하는 GPF, 그리고 유럽연합의 도로주행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장치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음도 잡고, FTA도 섭렵하다

세종공업의 수출은 2002년 현대기아자동차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과 함께 급물살을 탔다.

"2002년 중국 첫 진출 이후 미국과 러시아, 멕시코 등 해외 시장에도 공장을 세웠습니다. 현재 브라질과 인도, 터키를 제외한 현대기아자동차의 해외 진출 국가에는 세종공업의 공장도 함께 진출해있습니다."

2015년 세종공업의 총 매출은 1조 2천억 원이다. 내수와 해외수출의 비율은 4:7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의 들여오는 수익이 큰 편이다. 수출 시작과 함께 세종공업은 FTA 대응도 빨랐다.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부터 품목별 인증수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지만 첫 도전은 보기 좋게 미끄러졌다. 하지만 첫 시도에서의 실패가 이후의 FTA 대응 능력을 높여주는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후 저희 기업 규모에 맞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협력사들에게 FTA 관련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협력사 중 주요 10개사를 선정해 시스템을 연동하고, 울산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1박 2일의 FTA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 떨어진 품목으로 설명되어 있는 FTA 관련 책자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관련 품목을 사례로 든 책자를 새로 제작하고, 또 각 협력사들의 FTA 관리 능력을 등급으로 나눠 평가해 협력사들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012년 한·EU 검증 대증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9회에 걸쳐 사후 검증에 대응했습니다. 주로 사후 환급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세관에 대응 자료를 먼저 갖다 줄 정도가 되었죠."

세종공업은 FTA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70억원 가량의 관세 혜택을 받았다. 적극적으로 FTA에 대응하고 경험해 얻은 결과이다. '찾아가는 FTA 센터'를 사옥으로 신청해 협력사 컨설팅을 진행하고, 대학생 FTA 캠프에 세종공업 구매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실전 사례를 소개할 정도로 FTA 전문가가 된 세종공업은 협력사와의 관계, 완벽한 서류 준비가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FTA를 통한 수출 활용 능력과 함께 앞으로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본격적인 상용화에 대비해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역사와 함께해온 세종공업이 계속해서 미래의 한국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선두기업으로 이어나가길 기대해본다.

1

2

3

1 울산 북구 효자로에 위치한 세종공업 사옥 2 세종공업 공장은 대부분 자동화 설비가 갖춰져 있어 직원들은 기기 작동과 관리를 담당한다.
3 배기시스템 부품을 만들고 있는 산업로봇

글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까지 왔나?

WTO 무역원활화 협정

반세기간 근근이 연명해오던 국제통상규범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1986년부터 94년까지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결과 세계무역기구(WTO)로 발전했다. 그러나 WTO 체제 하 첫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는 2001년에 출범,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제9차 각료회의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좌초 직전 무역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발리패키지 합의에 성공했던 기억이 있다.

I. 무역원활화 협정의 시작과 전개과정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가 다자차원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도쿄라운드(1973~1979년) 당시였다. 그러나 관련 의제가 본격적으로 추진 단계에 들어선 것은 1996년 제1차 싱가포르 각료회의로, 당시부터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함께 무역원활화가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로 불리우게 되었다. 참고로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무역원활화는 여러 해 동안 분석 작업과 협상을 거치며 2001년 DDA출범 당시 해당 의제들을 협상 대상에 본격적으로 포함시킬 지 추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었고, 2004년 7월 패키지(July Package)에서 4개 이슈 중 무역원활화만 이후 DDA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05년 들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미국과 EU, 캐나다와 일본 등 기존 쿼드국가들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무역원활화 규범 제정을 지지하는 콜로라도 그룹(Colorado Group)의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하여, 아세안 및 아프리카의 개도국들 역시 핵심 그룹(Core Group)을 자구하여 무역원활화 협정의 대(對)개도국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핵심적으로 다뤄줄 것을 강조했다. 앞서 서문에서 언급한 바 있는 2013년 발리 패키지에서 극적으로 최종 채택되기까지 발목을 잡았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괴리와 간극이 이미 논의 초기부터 태동했던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은 무역원활화 협정에 있어서 특히 미국(선진국)과 인도(개도국)의 입장차이가 커 발리 패키지 이후 급물살을 타던 협상이 한때 '식량안보'(정부 식품 비축과 식품 보조금 지급 문제)를 이유로 한 인도의 반대로 큰 진통과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결국 2014년 11월 27일 최종 타결되었다. 한때 WTO의 일부 회원국들이 전체 DDA협상타결을 전제로 하며 무역원활화 협정의 발효는 기존 일괄타결원칙(Single Undertaking)을 주장하며 암초를 만나기도 하였으나, 이후 쟁점을 해결하며 무역원활화 협정은 회원국 2/3의 수락을 통해 발효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무역원활화 협정 추진 경과

일자	추진 경과
1996	제1차 WTO 각료회의(싱가포르): 상품무역이사회 논의 결정('싱가포르 이슈')
2001. 9	제4차 WTO 각료회의(도하): 5차 각료회의 이후 명시적 합의 하에 협상 개시를 규정, 구체적 협상 범위 합의(GATT 5조, 8조, 10조)
2003. 8	제5차 WTO 각료회의(칸쿤): 각료합의 실패로 협상 개시여부 불투명
2004. 7~8	WTO 차원의 협상 개시 노력으로 7월 'July Package' 타결 및 8.1일 공식협상 개시
2013. 12. 7	제9차 WTO 각료회의(발리): 협상 타결('Bali Package'에 포함된 3개 부문 일부)
2014. 1. 31	WTO 내 무역원활화 준비위원회(PCTF) 설치(의장: 필리핀 대사)
2014. 5~7	협정문 법률검토 완료 및 공식 언어본(영어, 불어, 스페인어) 채택(PCTF)
2014. 7. 22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지원기금(TFAF) 설치 공식 발표
2014. 7. 31	WTO 협정문 부속서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 실패(인도의 채택 거부)
2014. 11. 13	미국·인도 간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 동의 합의
2014. 11. 26	개정의정서최종문안 확정(PCTF)
2014. 11. 27	WTO 협정문 부속서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WTO 특별 일반이사회)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No.77(2014.12.16)

II. 무역원활화 협정의 의의와 내용

자유무역을 지향한 GATT와 WTO 체제 하에서 총 8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관세장벽은 많이 낮아져 이를 통한 무역의 원활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의 상존(尙存)과 여전한 무역비용은 무역관련 거래비용의 측면에서 여전한 고비용 구조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 차원에서는 무역원활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었다.

WTO체제에서 무역원활화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상품의 국경 간 이동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무역의 절차나, 수수료, 규정, 문서 등 제반 절차들을 단순화, 명료화 하고 이를 통해 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무역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실제 2001년 UNCTAD에 따르면 선진국의 관세율은 3.1%까지 하락한 반면, 무역비용은 전세계 교역액의 최대 15%를 차지하여 이를 상쇄할 시 초래될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는 GATT의 제5조(통과의 자유), 제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와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중심으로 한 통관절차의 개선이 핵심 내용인 무역원활화 협정은 법, 규정, 절차의 공표, 원산지 사전 심사, 수수료 및 부과금, 전자 결제, 신속한 선적을 위한 절차, 단일 창구 사용, 국경 절차 균일화, 통과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1]

III. 무역원활화 협정의 현위치

2004년 8월 협상 개시 이후 비교적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다 DDA의 표류로 함께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무역원활화 협정은 2013년 발리패키지 타결로 다시 금 동력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후 일괄타결원칙 논쟁이라는 복병을 맞기도 하였으나, 결국 2014년 11월 의정서 채택, 기존 WTO 협정의 부속서 1A에 부속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WTO전체 회원국(162개국) 중 2/(108개국)이 국내 절차를 마치고 이를 통보할 시 최종 발효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아홉 번째로 무역원활화 협정을 채택하였으며, 현재까지 81개국이 협정을 수락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스리랑카와 몰도바가 국내 절차를 마치고 무역원활화 협정을 수락하였다.

IV. 시사점

DDA 표류로 큰 위기에 처했던 WTO와 다자간 무역체제는 2013년 무역원활화 타결을 통해 다자간 통상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추후 DDA 협상 마무리를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무역원활화 협정이 최종 발효되게 되면, 이를 통해 국제무역이 더 확대되고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이며 이미 일정 수준 관련 국내절차를 마무리 진WTO회원국들은 별도의 추가부담이나 비용 없이 수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통관시스템에 대하여 성공적인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해당 협정을 통해 우리가 보유한 시스템을 수출하는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및 FTA 선도 국가 한국이 무역 시스템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1 국제상의(ICC)와 피터슨 연구소에 따르면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 시,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이 증가하고 2000만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조선비즈 2015.7.30 "한국, WTO'무역원활화협정' 수락")

글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사진 한국경제신문

실전 품목분류: ⑳CCTV와 블랙박스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모두 HS 8525.80호에 분류

CCTV와 블랙박스 사용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나 범죄 현장을 녹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 덕분에 치안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이러한 영상기기의 설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CCTV와 블랙박스의 순기능도 많다. 도로나 건물 등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가 많으며 범죄현장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의 확보는 이제 필수적인 단계가 되었다. 특히,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의 시비를 가릴 뿐만 아니라 각종 강력범죄를 해결하는 역할도 톡톡히 해나가고 있는 등 활용성이 뛰어나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다. 이미 익숙해진 시선 가운데 하나인 CCTV와 블랙박스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

CCTV, 모니터용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는 HS 8525.80호에 분류

먼저, CCTV는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TV 방송이 화상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폐쇄회로 시스템인 CCTV는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유선 또는 무선을 이용해 화상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CCTV는 특정 수신대상 이외에는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한다.

공공기관, 가게, 기업은 물론 집안에서도 CCTV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 사고 현장 녹화 등 치안 역할을 톡톡히 하는 CCTV에 대한 수출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관세율표상 HS 8525호의 용어에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 카메라레코더"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그룹을 설명하면서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를 예시하고 있다. 이렇듯 CCTV 카메라는 특정 공간에 설치되어 포착된 주변 영상 이미지를 카메라 외부(PC나 스마트폰)로 전송하여 원격 모니터링하는 본질적인 기능에 따라 모니터용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HS 8525.80호에 분류된다. 또한 인터넷에서 사용하거나 서비스되는 특수비디오 카메라로, 영상채팅, 인터넷 화상회의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웹캠(Webcam) 역시 CCTV 카메라와 함께 HS 8525.80호에 분류되고 있다.

항공기용 블랙박스 HS 8543.70호로 분류

한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의 블랙박스라고 하면 사고 기록을 담기 위해 차량에 설치하는 장비를 떠올리지만, 블랙박스(Black Box)는 본래 항공기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항공기 사고에 있어 중요하게 사용되는 장비 즉, 비행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FDR)와 조종실녹음장치(Cockpit Voice Recorder, CVR)를 넣어둔 금속박스를 말한다.

관세율표 HS 8543호에는 85류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동

가장 자주 사용되는 블랙박스는 차량용으로 HS 8525.80호에 분류되며,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사고를 대비해 다는 블랙박스 역시 동일하다.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내화성을 갖추고 충격에 강한 형태로서 특정 비행 중의 기록을 연속 기록하는 전자장치로서의 디지털 비행기록장치(Digital flight-data recorders)"를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용 블랙박스는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 8543.70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항공기용 블랙박스의 특성을 이용하여 선박과 철도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사용되고 있다. 선박용으로 사용되는 블랙박스의 경우 VDR(Voyage Data Recorder)이라 부른다. 각종 항해계기의 작동상태, 조작 데이터, 알람 기록, 통신장비의 송/수신 내역, 선교(조타실) 내부의 음성 기록, 선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CCTV 영상을 연동시키기도 한다. 철도차량의 경우 운전실의 주요 기기 취급과 계기판의 각종 게이지 및 표시 장치를 동영상으로 기록한다. 사실 이들 블랙박스의 기능 역시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록장치로서 항공기용 블랙박스와 같기 때문에 HS 8543.70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용 블랙박스 HS 8525.80호에 분류

오늘날에는 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설치되고 있다. 이미 대중화된 차량용 블랙박스의 품목분류는 어떨까?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페달(액셀레이터, 브레이크)이나 스티어링 휠(핸들)의 조작 여부, 차량의 속도 등 차량의 운행에 관련한 거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하는 장치인 EDR(Event Data Recorder)이며, 다른 하나는 차량 내부의 룸 미러 근처나 대시보드 등에 설치해 영상 데이터를 촬영,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카메라 형태의 제품이다. 카메라 형식의 차량용 블랙박스는 북미에선 대시보드 카메라(dashboard camera), 혹은 대시캠(dashcam)으로 부른다. 두 가지 방식의 블랙박스 모두 사고에 관한 정확한 정황을 분석하는데 쓰인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EDR은 차량 제조사가 직접 개발해 차량의 제조과정 중 탑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대시캠은 외부의 전문업체가 개발, 필요에 의해 이미 출고된 차량에 추가로 탑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EDR에 기록된 데이터는 보안 등의 요소로 차량 제조사의 도움 없이는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분석하기가 어렵지만, 대시캠을 통해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는 비교적 손쉽게 접근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차량용 블랙박스라고 하면 대시캠을 연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통 여러 구성요소와 함께 세트의 형태로 제시되지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카메라 본체에 해당한다.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는 HS 8525호의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에는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포함하고,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용 블랙박스(대시캠)은 항공기용 블랙박스와는 달리 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CCTV와 같이 HS 8525.80호에 분류된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용자들도 사고를 대비해서 블랙박스를 단다. 다만 차량용 블랙박스 대신 액션캠을 블랙박스 대용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액션캠 역시 HS 8525.80호에 분류된다.

중국 보안서비스 시장 활기 띄어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보안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CCTV,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은 보안관련 촬영 장비를 비롯하여 다양한 최첨단 제품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어 보안기기 분야의 진보된 기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보안서비스 시장 개방과 더불어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보안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안전을 위해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 하는 중국 정부의 규정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교통사고에 따른 문제로 인해 운전자 역시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IT 강국 이미지 및 한류 열풍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 및 CCTV 제품 등이 그 기술력과 함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글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사진 한국경제신문

중국이 오는 10월부터 영유아 조제분유 등록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규정에 따라 분유제조 기업당 브랜드는 3개, 제품은 9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중 FTA 비관세 장벽 이해 및 활용

하반기 식품과 화장품 인허가 개정안 발표

중국이 제조분유와 화장품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을 예고하면서 중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우유 판매량 감소로 중국 시장에서 활로를 찾던 우리나라 업체는 물론 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화장품 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입품 규정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26일 KOTRA에 따르면 최근 중국 식약품 주관부처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국내외 분유업체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 9개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등록업체의 자격요건과 제품 성분 관련 규정도 강화했고 성분 표시를 구체화하라고 명시했다. 강화된 규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분유 제조 규제가 정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OTRA 관계자는 "한국 기업을 비롯한 해외 제품의 중국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수입제품 급증세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 제품을 보호하는 비관세장벽"이라고 분석했다.

영유아 조제분유 등록관리 규정 발표, 10월부터 시행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 따라 분유제조 기업당 브랜드는 3개, 제품은 9개로 제한했다. 지난 6월 8일, 중국 식약품 주관부처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 이하 CFDA)은 분유업체 브랜드와 제품 수 제한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관련 규정 핵심은 ① 분유 제조기업당 브랜드는 3개, 제품(조제방법)은 9개로 제한, ② 등록업체 자격요건 및 제품 성분 관련 규정 강화, ③ 성분 표시와 라벨 문구 구체화 등 이었다. 관련 규정은 올해 10월 1일 부로 시행되며, 현재 생산 및 유통

영유아 조제분유 등록관리 규정

변경 항목	조항	내용
적용 대상	중국 내 분유를 생산업체와 해외에서 수입하는 분유에 일괄 적용(제2조)	중국에서 분유를 생산하는 현지기업은 물론 중국에 분유를 수출 중이거나 수출 계획이 있는 해외 업체도 자사 브랜드 제품을 본 규정에 근거해 등록해야 함.
자격 검증	업체별 자격 검증 강화 (제7, 8조)	연구개발, 생산, 검역 등 방면에서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중국 국가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제품 유통 가능
브랜드 및 제품 제한	등록은 기업별로 브랜드 3개, 제품은 9종 이내로 제한(제9조)	이번 발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자, 기업에게 영향이 큰 조항으로 브랜드와 제품(조제방법)을 원칙적으로 각각 3개, 9개로 제한한다고 발표/ 영유아 브랜드는 각각 0~6개월(1단계), 6~12개월(2단계), 12~18개월(3단계) 등 영유아 성장기에 맞춰 3단계로 구분 관리
성분 표시	각 분유 제품에 조제성분도 명확히 기재하도록 명시 (제23조)	분유 조제법 등록 성공 시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등록증 유효기간은 5년 등록번호: YP+연도+제품번호(4위). (예: YP20160001)
기타	'생태목장, '수입원료' 등과 같은 애매한 문구 사용이 금지되며, '아이큐 향상, '면역력 강화' 등 불확실한 효능 기재도 엄금(제32, 33, 34조)	우유를 원료로 할 경우 원산지를 명시해야 하며 적용되는 제품별 성장기, 즉 1, 2, 3단계를 표기해야 함.

중인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과 세부시행 규칙 등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유아용 조제분유시장 정비 목적, 지난해 의견수렴안 대비 규제 강도가 높아져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목표는 약품 관리방식을 조제분유에 도입해 해당 산업 규범화를 실현하고, 난립한 브랜드와 저품질 제품을 정비하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에 앞서 중국 CFDA는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공고해 5개 브랜드, 15개 조제법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번 발표 내용은 이보다 한층 강화된 3개 브랜드 9개 조제법으로 발표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위 표를 참조하자.

우려했던 화장품 규제 강화 현실로

중국이 화장품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었다. 화장품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화장품 규제 강화는 현

10월 시행 예정인 중국 제조분유 주요 규제 내용

규제 전	규제 후
없음	• 브랜드3개, 제품 9개로 제한 • 등록업체 자격요건 강화 • 제품 성분 표시 구체화

실로 드러났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 국무원의 화장품 조례 개정이다.

CFDA 화장품감독관리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재중국책임신고기관의 의무 확대 △ 안전평가 직원 채용 △ 생산품질관리 규범 신설 △ 화장품경영자가 보유해야 하는 서류의 강화 △ 인터넷 판매 시 책임강화 △ 해관 통관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수입 검사 신청 △ 부작용 모니터링 △ 법칙금의 명확화 등이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마련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안은 지난 1989년 9월 26일 국무원이 비준한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개정안은 총 79조에 걸쳐 화장품 원료 구매부터 생산, 출하,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품질과 안전 규정을 적용했다. 또 무허가 화장품 제조, 배합금지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 생산, 생산허가증 위변조 등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생산설비 몰수와 함께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에 보세구역 등 화장품 집중거래 시장 관련 규정, 인터넷 제3차 플랫폼 등 온라인 화장품 유통에 대한 생산경영자 실명 등록제 시행 근거도 추가됐다. 중국은 이 밖에도 한국 화장품 수입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보따리상, 따이공(代工)을 '밀수'로 규정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으며, 화장품 회사의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감독관리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중국 진출 희망업체 대응방안

최근 수입제품의 품질문제 대두에 따른 중국 내 검열 및 검사가 강화되어 예전보다 더 많은 해외기업의 수입 통관 적발 사례가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향후 대중국 수출 시 관련 법령 사전 숙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중국의 식품 수입 및 통관에 관한 인허가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한 중국 수출 행보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글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⑭중국 지식재산권 계약 – 영업비밀 및 경업금지 계약

영업비밀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가장 현안이 되는 권리

중국의 성장으로 중국기업과 우리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이 가진 영업비밀이 중국 기업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자본과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디지털화된 정보나 문서의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비밀 침해는 협업하는 상대 기업이 유출하거나, 퇴사하는 임직원이 경쟁업체로 가면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기업은 중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주의해야 한다.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련된 법률 규정은 1993년 9월 2일 제정된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을 기본으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한 『상업비밀 침해행위금지에 관한 일부의 규정(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사법해석으로 제정한 『부정경쟁 민사사건 심리에서 법률적용의 일부의 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审理不正当竞争民事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등에 의해 영업비밀(商业秘密)을 보호하고 있으며,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는 영업비밀 침해 유형으로 i) 부당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획득, ii) 부당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획득 후 사용·공표, iii) 비밀유지 요구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영업비밀 사용·공표, iv) 악의의 제3자에 의한 침해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상대 기업 또는 임직원들과의 영업비밀유지 계약과 퇴직하는 임직원과 체결하는 경업금지 약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중국 영업비밀의 요건

중국 법상 영업비밀은 외부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밀성),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경제적 이익 및 실용성), 비밀 유지 조치가 취해진(비밀유지조치) 경영정보와 기술정보를 의미한다. 영업비밀에 관한 계약 이전에, 우선 보호해야 할 어떠한 경영정보와 기술정보가 영업비밀 요건들을 충족하여 영업비밀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실무적으로 '비밀유지조치' 요건이 갖춰졌는지 즉, 권리자가 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최고인민법원의 『부정경쟁 민사사건 심리에서 법률적용의 일부의 문제에 관한 해석』 제11조 제2항 권리자의 비밀유지 주관적 의사, 비밀유지조치의 식별가능정도, 타인이 정당한 방식으로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난이도 등의 요소를 근거하여 적절한 '비밀유지조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영업비밀 보유자가 i) 비밀정보를 지득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인에게만 내용을 공지한 경우, ii) 비밀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잠금장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iii) 비밀정보의 매체상에 비밀표지를 표시한 경우, iv) 비밀정보에 비밀번호 또는 코드 등을 적용한 경우, v) 비밀보호약정을 체결한 경우, vi) 비밀 기구, 공방, 차량 등 장소에 내방자를 제한하거나 또는 비밀보호 요구를 하는 경우, vii)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타 합리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중국 영업비밀 유지 계약

영업비밀 유지 계약은 보통 우리기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맺거나 영업비밀 라이선스계약을 맺은 경우, 또는 중국 OEM, ODM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기업과 임직원 간의 노동 계약 중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영업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우리기업이 중국기업과 어떠한 영업비밀에 관련된 계약의 교섭 또는 협상 단계에서 미리 영업비밀의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본 계약에 영업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영업비

중국과의 교역에서
영업비밀을 잘 관리하고,
주의하는 것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관련 문제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영업비밀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본 계약에 영업비밀유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단계에서 영업비밀유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영업비밀 유지 계약에서 보통 계약의 목적, 계약 당사자 및 비밀유지 의무자, 영업비밀의 범위,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비밀 유지 기한, 정보의 반환, 위반 책임(위약금 및 손해배상책임), 분쟁해결방식 등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 중에 영업비밀 요건인 '비밀유지조치'의 충족과 관련된 것으로 영업비밀의 범위, 비밀 유지 의무, 비밀유지기한, 위반책임 등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영업비밀의 범위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중국 실무 상 영업비밀 유지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영업비밀보호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영업비밀 요건인 '비밀유지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영업비밀의 반환에 관한 조항에서, 영업비밀 유지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당 영업비밀 정보의 반환, 삭제, 폐기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다.

직원과의 영업비밀 유지 계약은 일반적으로 직원 채용 시에 체결하며, 근무 중 계약기간이 종료하였거나 이직으로 인한 퇴사 시에 보충해서 체결할 수도 있다. 특히, 해당 직원의 업무가 변경되어 새로운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영업비밀의 범위를 변경하여 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 노동법에서도 기업은 노동자에게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 기업에게 손해를 끼친 노동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으로, 노동자 즉, 임직원의 영업비밀 유지의무가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나, 앞서 설명한 '비밀유지조치'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유지 계약의 체결 여부가 중요하므로, 계약 자체를 명확하게 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중국 경업금지 약정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회사가 임직원과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영업비밀의 침해 분쟁은,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경쟁기업으로 이직하고, 경쟁기업이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일어난다. 임직원의 퇴직 또는 입사 시에 작성하였던 영업비밀 유지 계약을 보다 보충하여 새롭게 퇴직에 따른 영업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함께 경쟁기업으로의 이직을 금지하기 위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중국 실무 상 단순한 경업금지 약정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유지 조항, 즉 비밀유지조치를 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유지 계약과 경업금지 약정을 함께 챙겨야 한다.

경업금지 약정은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 수입을 제한하여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일정 정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에 제한될 수 있다.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요건으로, i) 영업비밀이 존재하고 영업비밀과 접촉할 수 있었던 임직원일 것, ii) 합리적인 제한 기한 및 범위가 설정될 것, iii)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중국 노동법 제23, 24조는 노동계약 또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으로 노동자가 노동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기간 동안 동종 업체에 취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동종업체에 취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기업에 취직하거나, 스스로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창업하는 것 역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업금지기간 동안에 경제적 보상으로 월마다 지급해야 하고, 경업금지 범위와 기간은 약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제적 보상의 정도는 그 보상금의 액수가 너무 적은 경우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 관련 안건에 적용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해석(4)(关于审理劳动争议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四))』 제6조에서, 경제적 보상이 없는 경업제한 약정 의무를 다한 노동자에게 노동 계약 해지 전 12개월 평균 임금의 30%의 경제적 보상을 월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경제적 보상의 정도를 규정하는 데 참고해야 할 것이다.

글 유영진 관세사(세정관세법인)
사진 한국경제신문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콜롬비아 FTA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

일부 품목 MFN세율보다 0.5%포인트 낮은 특혜관세율 적용

2012년에 타결되었으나 콜롬비아 측의 국회비준 동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콜롬비아 FTA (이하 "한·콜 FTA")가, 지난 6월 15일 콜롬비아 측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통보 접수일인 6월 15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7월 15일에 한·콜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지정학적으로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이번 한·콜 FTA를 통해 인구 4,600만 명의 내수시장을 선점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본집약적 상품과 석유, 광물 등 1차 상품의 상호보완적인 무역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한·콜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FTA 세율이 콜롬비아 측 MFN세율보다 높은 경우 특혜관세율 적용(부속서 2-가)

한·콜 FTA 협상개시 당시 기준세율을 2010년 1월 1일 MFN으로 설정하였으나, 협상이 지속되던 2010년 11월 콜롬비아 측의 대대적인 MFN 세율 인하조치로 인해, 한·콜 FTA가 발효되더라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일부 품목에 대해 FTA를 적용할 실익이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즉, 한·콜 FTA가 발효되더라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FTA세율 〉 MFN세율"과 같이 당초 의도한 특혜 실익이 상실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MFN 세율보다 0.5%포인트 낮은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도록 보상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

〈대상품목 : 자동차의 완충기와 그 부분품(HS 8708.10-0000) - "a"〉

- 기준세율 15%(2010년) / MFN세율 10%(2012년) / 양허유형 5(5년균등철폐)
- 기준세율에 의거 매년 3%씩 관세가 인하되어 이행 5년차부터는 특혜관세 0% 적용
- 이행1년차(MFN세율 : 10% 〈 FTA세율 : 12%) → 10−0.5 = 9.5% 특혜관세 적용
- 이행2년차(MFN세율 : 10% 〉 FTA세율 : 9%) → FTA관세 9% 적용

〈대상품목 : 자동차의 안전벨트(HS 8708.21-0000) - "c"〉

- 기준세율 15%(2010년) / MFN세율 5%(2012년) / 양허유형 5(5년균등철폐)
- 기준세율에 의거 매년 3%씩 관세가 인하되어 이행 5년차부터는 특혜관세 0% 적용
- 이행1년차(MFN세율 : 5% 〈 FTA세율 : 12%) → 5−0.5 = 4.5% 특혜관세 적용
- 이행2년차(MFN세율 : 5% 〈 FTA세율 : 9%) → 5−0.5 = 4.5% 특혜관세 적용
- 이행3년차(MFN세율 : 5% 〈 FTA세율 : 6%) → 5−0.5 = 4.5% 특혜관세 적용
- 이행4년차(MFN세율 : 5% 〉 FTA세율 : 3%) → FTA관세 3% 적용

해 콜롬비아 측 양허표상 비고란에 “a, b, c, d”로 기재하고 있다. “a”의 경우 이행 1년차에만 관세인하 실익이 없어 “MFN세율–0.5”가 적용되며, “b”는 이행 1~2년차까지 관세인하 실익이 없으므로 “MFN세율–0.5” 적용되고 “c”는 이행 3년차까지, “d”는 이행 4년차까지 “MFN세율–0.5”이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표기는 2012년 기준의 MFN세율에 기초하여 비고 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2016년 현재 콜측의 MFN세율과 특혜관세를 추가로 비교하여 그 실익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되는 상품에 대한 면세 (제2.6조)

한·미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양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와 관계 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원산지 규정

1) 역내가치포함비율(제3.3조)

한·콜 FTA는 품목별 기준으로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제법(BD)과 집적법(BU)를 규정하고 있으며, 완성차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순원가법(NC)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최소허용기준(제3.7조)

세번변경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HS 제1류 ~ 제24류까지에 분류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상품과 6단위 세번(sub–heading)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1501호 내지 제1508호 및 제1511호 내지 제1511호에 분류된 상품의 경우 최소허용기준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50류 내지 제63류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기준으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제품 중량의 10% 이내인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3) 불인정 공정(제3.14조)

불인정 공정이란 원산지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기준에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의 공정이나 처리로서 하나 또는 그 조합만을 거친 경우 단순 공정만을 거쳤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협정별로 불인정 공정을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약간 상이한데, 여기에는 일부 예시 공정을 나열한 후 이와 유사한 공정이라 하여 ‘예시주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불인정하는 공정을 모두 열거하고 이에 해당되면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하는 ‘열거주의’ 방식이 있다. 한·콜 FTA의 경우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국내에서 수행되는 공정이 비교적 단순하다면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지 않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역외가공원칙(부속서 3–나)

영역원칙의 예외로서, 개성공단에서 수행되는 공정은 한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여기서 생산되는 100개 품목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정하고 있다. 다만, 비원산지 가치가 제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40%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글 유영웅 관세사(관세법인 네오)

Materials to Demonstrate Product Country of Origin under the UKFTA

I. About Exporter/Manufacturer)
II. 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
III.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Certification under the UKFTA
IV. Additional Information
V. Evidence/References

한·미 FTA 하에서 물품의 원산지 소명 자료

I. 수출자 / 제조자 소개
II. 검증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
III.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IV. 추가 정보
V. 관련 증빙자료

FTA 사후 검증팁: 효과적인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작성법⑥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시 협정문 원본 내용 그대로 사용

지난호에는 검증대상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인 Chapter III의 세부목차 중 1과 2번 목차에 대한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수출물품에 대하여 재차 간략하게 설명하고 품목분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해당품목에 대한 HS 코드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었다면, 해당 HS 코드에 대한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설명하고, 충족함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설명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Chapter III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Certification under the UKFTA

Chapter Ⅲ의 목차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목차를 세분화한 것으로 해당 내용만 포함된다면 축약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1. Exported Goods	1. 수출물품에 대한 기본 정보
2. Tariff Classification(HS Code)	2. 품목분류
3. Criteria of the Origin Determination	**3. 원산지결정기준**
4. List of Materials	**4. 원재료 리스트**
5. Decision	5. 원산지 판정
6. Result of Determination	6. 원산지 판정 결과

3. Criteria of the Origin Determination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으로 목차 1과 2에서 결정된 HS 코드에 따라 협정에서 정해진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할 때에는 되도록 협정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약어나 표현 등이 CBP 검증요원에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협정문은 fta.go.kr에서 pdf 형태로 제공되며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로 다르긴 하나 대부분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 부분에 부속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관세청 FTA 포털(Yes FTA) 등에서도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정문 원본을 찾아보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협정문 참고] fta.go.kr 접속 → 국가 클릭 → 협정문 및 기본문서 클릭 → 협정문 상세보기 → 제6장 원산지 (영문본 클릭)

8714.99
A change to subheading 8714.99 from any other heading.

87.15
A change to heading 87.15 from any other heading.

8716.10 – 8716.80
A change to subheading 8716.10 through 8716.80 from any other heading; or

한·미 FTA 협정문상 제8715호에 대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예시

HS Code	Division	Item	Preference Criterion
8715.00	1	Baby carriages and parts thereof.	A change to heading 87.15 from any other heading (CTH)

협정문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참고하여 예시와 같은 표를 만들어 해당 HS 코드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나타내 주었다.

참고

세번변경기준
(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HS 코드는 6단위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단위를 '류(Chapter)', 4단위를 '호(Heading)', 6단위를 '소호(Sub-heading)'으로 표현한다.

세번변경기준은 제조가공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원재료부터 완제품 순서로 분류되는 품목분류표의 분류체계에 의하여 원재료의 HS 코드에서 완제품의 HS 코드로 일정수준 이상 변경되는 것을 기준으로 역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은 2단위, 4단위, 6단위 변경기준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 **2단위 변경기준**
  (CC ; Change of Chapter)
  : 다른 2단위 류(Chapter)에서 해당 류(Chapter)로의 변경
  (예시 : 원재료 제39류 플라스틱 → 완성품 제95류 플라스틱제 완구
- **4단위 변경기준**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 다른 4단위 호(Heading)로부터 해당 호 (Heading)로의 변경
  (예시 : 원재료 제3908호 폴리아미드 → 완성품 제5402호 합성필라멘트사)
- **6단위 변경기준**
  (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다른 6단위 소호(Sub-heading)로부터 해당 소호(Sub-heading)로의 변경
  (예시 : 원재료 제8708.99호 기타 자동차 부분품 → 완제품 제8708.29호 자동차 완충기)

4. List of Materials

제8715호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HS 코드 변경기준인 CTH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의 HS 코드와 완성품의 HS 코드를 비교하여 4단위가 변경되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별첨한 BOM을 요약하여 해당품목에 사용된 원재료의 리스트를 기재하였다. 원재료의 품명, 규격, HS 코드, 소요량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BOM이 있지만 검증요원의 편의와 소명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논리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요약해 주는 것이다.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는 품목이므로 비원산지재료의 HS 코드를 중심으로 기재하였으며, 원재료의 단가(Price)는 블라인드 처리하였다.

예시

List of Materials : 10 materials per unit of exported goods.)
*Stroller part

Material	HS Code (6 digit)	Origin	Q'ty	Price (KRW)	Supplier
Nylon/————	5903.20	Unidentified	–	Blind	————
Poly——— film	3920.61	Unidentified	–	Blind	————
P——	3920.49	Unidentified	–	Blind	————
Nylon/—————	5407.42	Unidentified	–	Blind	————
Zipper	9607.19	Unidentified	–	Blind	————
Slider	9607.20	Unidentified	–	Blind	————
———— tape	5801.31	Unidentified	–	Blind	————
———hook	3926.90	Unidentified	–	Blind	————
——— band	5407.92	Unidentified	–	Blind	————
thread	5401.10	Unidentified	–	Blind	————

*다음호에 계속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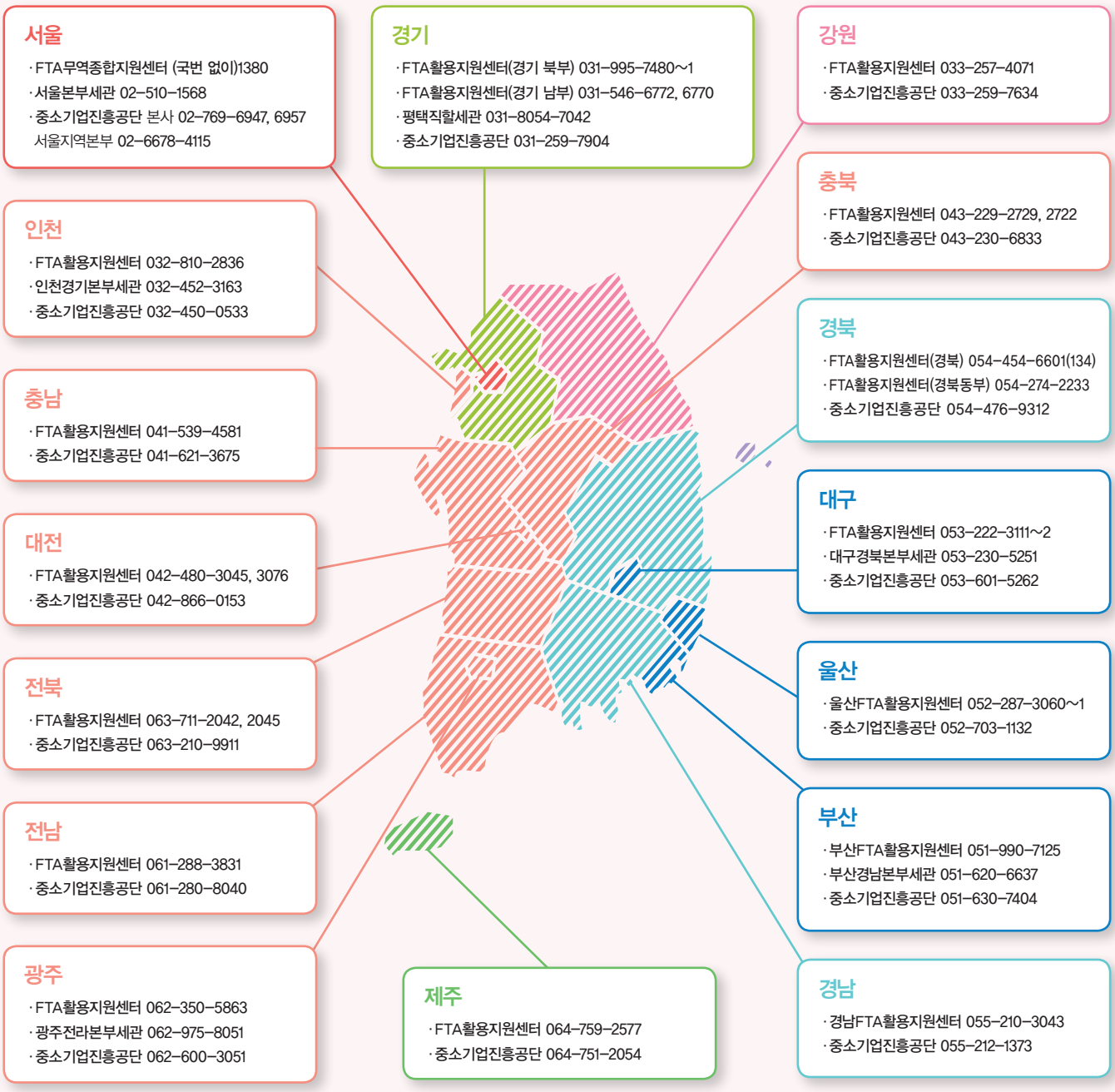

서울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국번 없이)1380
- 서울본부세관 02-510-1568
-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02-769-6947, 6957
  서울지역본부 02-6678-4115

경기
-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북부) 031-995-7480~1
-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남부) 031-546-6772, 6770
-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2
- 중소기업진흥공단 031-259-7904

강원
- FTA활용지원센터 033-257-4071
- 중소기업진흥공단 033-259-7634

충북
- FTA활용지원센터 043-229-2729, 2722
- 중소기업진흥공단 043-230-6833

인천
- FTA활용지원센터 032-810-2836
- 인천경기본부세관 032-452-3163
- 중소기업진흥공단 032-450-0533

경북
- FTA활용지원센터(경북) 054-454-6601(134)
- FTA활용지원센터(경북동부) 054-274-2233
- 중소기업진흥공단 054-476-9312

충남
- FTA활용지원센터 041-539-4581
- 중소기업진흥공단 041-621-3675

대구
- FTA활용지원센터 053-222-3111~2
- 대구경북본부세관 053-230-5251
- 중소기업진흥공단 053-601-5262

대전
- FTA활용지원센터 042-480-3045, 3076
- 중소기업진흥공단 042-866-0153

울산
- 울산FTA활용지원센터 052-287-3060~1
- 중소기업진흥공단 052-703-1132

전북
- FTA활용지원센터 063-711-2042, 2045
- 중소기업진흥공단 063-210-9911

부산
- 부산FTA활용지원센터 051-990-7125
- 부산경남본부세관 051-620-6637
- 중소기업진흥공단 051-630-7404

전남
- FTA활용지원센터 061-288-3831
- 중소기업진흥공단 061-280-8040

경남
- 경남FTA활용지원센터 055-210-3043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212-1373

광주
- FTA활용지원센터 062-350-5863
- 광주전라본부세관 062-975-8051
- 중소기업진흥공단 062-600-3051

제주
- FTA활용지원센터 064-759-2577
- 중소기업진흥공단 064-751-2054

글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 소장(문학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⑳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밤의 손님'이다?

요즘 중국의 어선들이 전 세계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1902~1985)이 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서 중국이 명나라 때 해상패권을 스스로 놓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역사 속 패권을 잃은 사례

1421년 명나라는 양자강을 통해서 해상항해와 직접 연결되는 장점이 있는 남경을 버리고 만주와 몽골 지방으로부터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북경으로 천도했다. 이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계-경제'가 결연히 방향을 전환한 중요한 사건이자 바다의 편익을 이용한 경제 형태와 활동양태에 대해서 중국이 등을 돌린 것을 의미한다. 귀를 막고 좁은 곳에 눌러앉은 대도시 북경은 대지의 한복판에 뿌리를 박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려고 했다. 이 순간부터 세계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경쟁에서 중국은 지고 들어가게 되었다.

정화(鄭和)는 윈난 성 출신의 이슬람교도로, 영락제 때 중용되어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전후 일곱 차례에 걸친 대원정을 감행, 동남아시아, 인도 남해안, 서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원정하였다. 이때부터 조공 무역이 융성하여 약 30여 국이 조공하였다. 정화의 원정으로 중국인의 바다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었고, 중국인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켰는데 이게 화교의 기원이다. 그런데 작금의 중국은 남중국해 등지에서 해상패권을 강화하고 있고 심지어 자국 어선들의 해적질 같은 행위에도 눈감고 있다. 마치 명나라 시절 상실했던 해상패권을 되찾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브로델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1582년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취한 선택을 이야기한다. 당시 스페인은 정치적으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다.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을 정복하고(1580) 그의 정부를 리스본에 세운 다음 약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 이때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마치 명나라 시절 잃어버린 해상패권을 되찾기 위한 행동처럼 보인다. 브로델은 과거 명나라의 사건을 국민변동을 야기한 장기적인 사건으로 해석한다.

페르낭 브로델(1902~1985)
프랑스의 역사가이자 교육자로 사건사·사회사·구조사를 대응시키며 15~18세기 근대 문명의 전체사를 서술해 역사학계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했다.

리스본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대양을 마주하고 있는 이 도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 이상적인 곳이었다. 국왕과 정부 주재라는 든든한 배경을 등에 업고 스페인 함대는 1583년 아조레스 제도에서 프랑스인들을 축출하고 포로들을 별다른 재판 절차 없이 배의 활대에서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1582년 정부가 리스본을 떠난 것은 제국의 경제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중심지를 포기한 것이었다. 그리고는 스페인의 힘을 카스티야의 활기 없는 중심부인 마드리드에 가두어놓게 되었다. 브로델은 이를 스페인의 크나큰 실수라고 진단한다. 그 결과 오래 전부터 양성되어온 무적함대는 1588년 영국에 대패했다. 이는 스페인 국민에게 패배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나온 작품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1605)이다.

인간과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국민변동

여기서 잠시 브로델이 말하는 '세계-경제'의 개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흔히 말하는 글로벌 경제, 즉 '세계경제'는 지구 전역에 걸쳐 있다. 이에 비해 '세계-경제'는 경제적으로 독자적인 단위를 말한다. 특히 '세계-경제'는 중심부에 위치해 주변부와 반(半)주변부를 예속도시로 두는 계서제를 취한다. 브로델은 16세기의 지중해를 '세계-경제'로 분석한다. 여기서 지중해권은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통일성을 띠고 북부 이탈리아의 지배적인 도시들, 즉 베네치아를 필두로 밀라노, 제노바, 피렌체 등에 의해서 그 주변도시들과 위계적으로 건설된 것이다. 서구에서는 베네치아에서 시작해 앤트워프, 제노바, 암스테르담, 런던, 뉴욕 등 '세계-경제'들이 출현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이 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원제는 〈물질문명, 경제, 자본주의, 15~18세기, Civilisation materielle, economie et capitalisme, XVe-XVIIIe siecle〉로, 모두 3권으로 구성돼 있다. 제1권 '일상생활의 구조'는 1967년에 출간됐고, 1979년에 제2권 '교환의 세계'와 제3권 '세계의 시간'이 출간됐다.

브로델의 역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 개념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역사학, 즉 그가 규정하는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브로델은 14~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약 400년 동안 서유럽에서 장기 지속했던 역사를 분석한 뒤 이것을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한다. 브로델에 의하면, 역사는 삼분구조로 되어 있다. 즉 '구조-콩종크튀르(국면변동)-사건'의 역사가 층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바다의 비유를 즐겨 사용하는데, 맨 아래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구조에 해당한다. 그 위에 '완만한 리듬을 가진 역사'가 있는데 이게 콩종크튀르(conjoncture)이다. 맨 위에는 '표면의 출렁거림'이 있는데 이게 사건에 해당한다. 콩종크튀르는 브로델이 구조로서의 장기 지속적인 사건과 단기적인 사건 사이에 '중기적' 시간대로 설정한 것이다. 콩종크튀르는 10년에서 5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오르내리는 경제, 사회, 문화상의 추세적 변동이나 순환을 가리킨다. 구조는 맨 아래에 무겁게 놓여 있을 뿐, 브로델의 역사 설명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단기간의 사건 또한 무시될 정도다. 브로델의 역사에서 인간과 사건을 지휘하고 지배하는 것은 '국면변동'이다. "무엇보다 특히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국면변동은 작용한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게 브로델은 '장기적인 사건'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특히 장기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오랫동안 국면변동과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명나라의 해상철수와 남경에서 베이징으로의 수도 이전, 펠리페 2세의 리스본에서 마드리드로의 수도이전은 '장기적인 사건'으로 콩종크튀르, 즉 국면변동을 야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세종시 이전은 '장기적인 사건'이 아닐까. 따라서 정책 결정권자에게 '장기적인 사건' 혹은 '콩종크튀르'의 개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브로델은 역사를 삼분구조로 보았는데 자본주의 또한 삼분할체제로 분석했다. 즉 물질생활(물질문명)-(시장)경제-자본주의로 구성된다. 여기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산업혁명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주장을 편다. 특히 자본주의는 수직적 위계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자본주의는 결국 꼭대기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특권과 권력을 누린다. 자본주의는 국가와 한 몸을 이룰 때에만, 즉 자본주의가 국가가 될 때에만 승리한다고 강조한다. 또 자본주의는 '밤의 손님'이라고 재미있는 비유를 한다. 밤의 손님처럼 별다른 수고도 하지 않은 채 진수성찬을 즐긴다는 것일까…….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FTA NEWS

한·콜롬비아 FTA 7월 15일 발효 예정

아시아 국가 최초의 FTA,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 수출 확대 기대

한·콜롬비아 FTA가 오는 7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외교부청사 동아기 집무실에서 열린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장관 면담.

지난 2013년 2월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여 오는 7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지난 2014년 4월 국회 비준 동의로 국내 절차를 완료하여 같은 해 5월 콜롬비아 측에 이를 통보하였다. 콜롬비아는 동 협정 이행법률이 2014년 12월 상·하원을 통과한 후 2016년 4월 헌법재판소 헌법 합치성 검토 절차를 마치고 현지시각 2016년 6월 15일자로 우리 대사관에 비준절차 완료를 통보해왔다. 그간 우리 정부는 2015년 4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조속한 비준 절차추진을 요청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계기에 콜롬비아 측 비준절차 가속화를 촉구하였다. 한·콜롬비아 FTA는 협정문 발효조항에 따라 콜롬비아 통보문 접수일(2016년 6월 15일) 기점으로 30일 후인 7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중기술·창업 협력 중심 한·이스라엘 FTA 추진

산업부, 한·이스라엘 관련 민간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지난 6월 2일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수출, 창업, 기술협력 관련 기업 대표와 연구소, 투자 관계사 20여 명이 참석해 한·이스라엘 관련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일 한·이스라엘 FTA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수출, 창업·기술협력 관련 기업, 연구소, 투자기관 등이 참여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향후 개시될 한·이스라엘 FTA 협상에 대비해 양국간 교역, 창업·기술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FTA를 통해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연구원과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은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이스라엘이 창조경제 롤 모델인 점을 감안, FTA를 통한 교역·투자, IT·산업·과학기술 협력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참석 기업들도 이스라엘과의 향후 유망협력 분야로 무인기, 스마트 공장, 바이오 등을 언급하면서 금번 FTA 추진에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한·이 FTA는 교역·투자 중심의 기존 FTA 틀을 뛰어넘어 상생형 기술·창업 협력 FTA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한·이스라엘 FTA 효과의 가시적·조기 체감을 위해 ① 신속한 협상 진행, ② 다양한 분야의 협력 수요 반영, ③ 업계애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5월 24일 양국 사무차관 면담을 계기로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고, 오는 6월 27일부터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14개 분야 협정문 협상 가속화될 예정

RCEP 제13차 공식협상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13차 협상이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되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50여명 참석했다.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시장접근 협상과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등 총 14개 분야 협정문 협상이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특히 RCEP 참여국 정상들의 2016년 협상 타결 지침을 염두에 두고, 하반기 공식협상 일정 및 장관회의 의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관계부처 및 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RCEP 타결 시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 확보 및 활발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가 기대되며, 이는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FTA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Information

| Chapter 1 | 공급망 교육이란?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료/부품 공급(Supply Chain) 기업들의 원산지 확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수출기업과 관련 협력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FTA 원산지 관리 교육을 제공해드립니다.

- **신청교육** 교육참석가능 협력사 10개사 이상(*10개사 미만 시 협의)
- **교육신청** FTA1380콜센터(국번없이 1380)/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kr)
- **교육비** 전액 무료

| Chapter 2 | 공급망 교육 지원내역

- **교재제작** 수출품목 맞춤형 교재를 제작해 드립니다.
- **강사지원** FTA종합지원센터 다수의 전문가(관세사)가 강의 및 분임토의를 진행합니다.
- **장소제공** 서울FTA센터 및 전국 17개 지역FTA센터의 교육 장소를 제공해드립니다.

| Chapter 3 | 공급망 교육 기본 커리큘럼

분류	소요시간	교육내용
Intro	15분	FTA종합지원센터 사업 안내
FTA 원산지 관리 교육	60분	FTA활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의 이해 • FTA 일반현황 및 기본적인 원산지 관리 • 사례를 통한 원산지 기본 충족 원리
	60분	효율적인 FTA실무 서식 작성 요령 • 원산지확인서/증명서, 원료명세서, 원재료수불부 작성법 • 사후검증 대응방안 안내
분임 토의	60분	업체별 FTA활용 현황 공유 및 전문가 상담 •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분임을 편성, 분임별로 전문가(관세사)가 투입되어 업체 간 자유토론 유도 • 전문가(관세사) 상담과 피드백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 실시

*교육구성 및 진행시간은 조정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

- 〈찾아가는 1380 컨설팅〉, 〈OK FTA 컨설팅〉, 〈영세기업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기타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교육 참가업체 사후관리 지원
- FTA센터를 활용한 지방소재 업체 사후 관리 지원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탐방 연재시리즈를 잘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수상기업들의 사례 전파가 좋은 컨설팅 역할도 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신제품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석 대전 중구 문화1동

태경식품의 '한국의 김맛'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틈새시장을 활용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처하는 모습, 해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준비성까지 갖춘 그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형준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한중 FTA와 APTA 활용' 기사를 잘 봤습니다. APTA의 추가협상 타결로 올 하반기부터 중국의 관세 인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서둘러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영순 인천시 남동구 간석2동

'지식재산권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라'를 읽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유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그 권리를 적극 활용해 세계무대로 나가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보경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3동

함께하는 FTA

July 2016 / vol.50 www.fta.go.kr

알림

독자엽서를 이메일로도 받습니다.
보내시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엽서의 질문 답변 내용을 적어서 agami2@korea.kr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존처럼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E-mail

□□□□□

요 금
수취인 부담

발송유효기간
2015.3.25~2017.3.25

35736-40003
세종 아름동우체국

받는 사람

〈함께하는 FTA〉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3 0 1 1 8

함께하는 FTA

〈함께하는 FTA〉는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공간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함께하는 FTA〉를 만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7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FTA〉를 보신 소감은?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무엇이었나요?
이유를 적어주세요.

〈함께하는 FTA〉를 어디에서 보셨나요?
예) 은행, 관공서, 도서관 등

〈함께하는 FT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또는 FTA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정기구독(무료)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독자 신청 또는 기존 독자 주소 변경은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agami2@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호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아래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함께하는 FTA〉 6월호
독자 이벤트 당첨자 명단

정경석 대전 중구 문화1동
이형준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배영순 인천시 남동구 간석2동
공보경 부산시 북구 화명3동
박현희 부산시 금정구 동현로
박수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
김예원 경남 양산시 교동
한수정 서울시 강동구 길동
노혜정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김종원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독자엽서 당첨상품 반송 시 1년 간
(우체국 배송자료 보관 시한) 보관합니다.

"국민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행정심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신속·공정한 권리구제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행정심판 대상

- 각종 인·허가 및 면허·자격 관련 처분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 등 부과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 학교폭력 재심결정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등

전화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www.motie.go.kr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